

正祖代 端宗 事蹟 정비와 ‘君臣分義’의 확립

윤 정

1. 머리말
2. 配食壇 건립과 『莊陵誌』 개찬
 - 1) 配食壇 건립의 배경과 과정
 - 2) 『莊陵誌』 개찬과 『莊陵史補』 편찬
3. 正祖의 繼述 이념과 ‘君臣分義’의 확립
 - 1) 正祖의 肅宗·英祖 繼述 이념
 - 2) 元子 위상의 강화와 ‘君臣分義’의 확립
4. 맺음말

1. 머리말

조선 22대 국왕 正祖(재위: 1776-1800)의 시대는 조선후기 정치와 국가체제가 부흥을 이루고 문화가 발전한 시기로 평가되어 왔다. 이 과정에서 정치와 문화의 발전을 이끈 국왕 정조에 깊은 관심이 모아졌으며, 그의 학문과 정치에 대해 많은 연구가 축적되었다. 정조는 蕩平論을 제기하며 정치운영에 있어서 국왕의 주도권을 재확립하였으며, 奎章閣을 설립하고 학자를 우대하는 右文政治를 적극적으로 펼쳐 가는 동시에 『弘齋全書』로 대표되듯이 스스로 뛰어난 학자로서의 면모를 보였다. 또한 그의 학문적 예술적 관심은 18세기 조선사회의 문화 발전을 자극한 것으로 평가되어 왔다.¹⁾ 이러한 연구를 통해 당쟁 속에서 이권투쟁에 골몰한 것으로 평가받던 조선시대 정치 지배층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극복하는 단초를 열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정조의 정치를 당대에 국한하여 인식함으로써 그것이 先代의 肅宗

1) 鄭玉子, 1988 「正祖朝 文化政策」 『朝鮮後期文化運動史』, 一潮閣 ; 1990 「正祖의 文化政策」 『朝鮮後期 文學運動史』, 서울대학교출판부 ; 2000 『정조의 수상록 일득록 연구』, 一志社 ; 2001 『정조의 문예사상과 규장각』, 효형출판 ; 정옥자 외, 1999 『정조시대의 사상과 문화』, 돌베개

과 英祖를 계승하는 측면에 대해서는 충분히 다루지 못하였다. 또한 국왕의 학문은 국가정책의 최고 결정권자로서 정치적인 목적을 배후에 깔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고려 또한 필수적이라고 생각한다.

통상 국가의 최고 통치자로서 국왕의 정치사상은 ‘祖宗之成憲’, 내지 ‘先王成典’을 준수한다는 명분 아래 선왕대의 행적을 중시하는 방향성을 가지며, 이는 ‘繼述’·‘善述’이라는 이념으로 제시되고 있었다. 그런데 국가체제를 재정비해 가는 숙종 이후의 국왕에게 이 이념은 통상적으로 표방되는 명분을 넘어 실질적인 정치 사상으로 기능하면서 정책 실행의 토대가 되었다는 점에서 보다 주목할 필요가 있다.²⁾

실제 영조의 정치는 숙종에 대한 계술을 강력하게 표방하고 있었고, 정조 또한 숙종 및 영조에 대한 계술을 국정 운영의 주요한 명분으로 삼았다. 따라서 정조의 정치 사상을 보다 깊이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측면에 대해 검토하는 작업이 수반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시각에서 주목되는 것이 바로 端宗 事蹟의 정비이다.

死六臣과 端宗 문제는 조선 국가체제의 완성을 상징하는 世祖와 직접 관련되어 후대 국왕이 건드릴 수 없는 사안으로 여겨졌다. 그러나 換局이라는 정치 변동 속에 숙종에 의해 사육신과 단종의 追復이 전격 실현되었다. 이것은 국정 운영에 대한 신료들의 비판적 公論을 국왕이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한편, 군주에 대한 신료들의 節義를 강조함으로써 ‘君臣의 分義’를 명확히 하고, 이를 통해 국왕의 정국운영 주도권을 확보하고 世子の 정치적 입지를 확증하려는 조치였다.³⁾

그리고 이 경험은 先王의 사업을 계승 발전시킨다는 ‘繼述’ 이념을 매개로 영조에게로 계승되었다. 영조는 숙종이 세조의 공훈에 관계된다는 이유로 끝내 거부하였던 三相(皇甫仁·金宗瑞·鄭某)의 追復을 전격 단행하였고, 安平大君 등 단종과 관련하여 화를 입은 왕실 자제들도 차례로 추복하였다. 영조는 이러한 조치를 모두 세조 및 숙종에 대한 계술로 명분화함으로써 국가체

2) 윤정, 2002 「조선 世祖代 『訓辭』 편찬의 정치사상적 의미」, 『韓國學報』108 ; 2004. 9 「英祖의 三相 追復과 ‘善述’ 이념 - 영조 정치사상의 일 단면」, 『韓國學報』116
3) 윤정, 2004.6 「숙종대 端宗 追復의 정치사적 의미」, 『韓國思想史學』22

제의 변통을 이끌어 가는 강력한 군주권을 천명하였다.⁴⁾

이 과정에서 癸酉靖難과 단종 복위 시도 등에 연루되어 화를 입은 사람들은 국왕에 대해 충절을 지킨 인물들로 표상되었고, 이들을 추복하는 것은 하나의 당위로 수립되었다. 이로부터 각지에서 단종과 관련된 인물들의 사례를 발굴하고 이들의 추복과 旌闈, 贈諡 등을 청원하는 상소가 이어지게 되었고, 정부에서도 검토를 거쳐 이를 수용하는 태도를 보였다. 이러한 추세는 정조대에 들어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정조는 先代에 추복이 이루어진 주요 인물 외에 단종에게 충의를 지킨 여러 신하(이하 '諸臣'으로 약칭함)의 사적을 발굴하고 표장하는 사업을 이어나갔다. 이러한 작업은 1791년(정조 15) 莊陵에 諸臣을 함께 제향하는 配食壇의 건립으로 일단락되었으며, 이로부터 단종과 관련된 제반 자료를 재정리하기 위해 『莊陵誌』를 개찬하는 작업이 이어져 1796년(정조 20)에 결실을 보게 되었다.

당초 숙종이 세자 위상의 강화라는 정치적 의도에서 사육신과 단종의 추복을 단행하고 이를 통해 '君臣의 分義'를 천명하였고, 영조는 이를 충실히 계승하여 三相 추복을 단행하면서 체제 운영의 기초로서 '善述'의 이념을 전면화하였다. 이러한 맥락에서 볼 때 정조대 단종 사적의 정비 또한 정조 정치 사상의 일면을 볼 수 있는 매개로서 주목된다. 그것은 숙종 및 영조의 정치를 계승한다는 계승 이념과 아울러 정조 자신의 정치적 의도라는 관점에서 접근할 수 있을 것인데, 이는 단종 사적이 가지는 상징성, 곧 '君臣分義'의 확립이라는 방향성을 가질 것이다.

이러한 시각에서 본고는 정조대 진행된 단종 사적 정비의 내용과 그것의 정치사적 의미를 살펴보고자 한다. 우선 1장에서는 단종 사적 정비 작업의 결산이라 할 수 있는 배식단 건립과 『장릉지』개찬 작업에 대해 살펴볼 것이다. 특히 후자에 대해서는 현재 규장각에 소장된 『장릉지』관련 서적의 검토를 통해 개찬 과정에서 작성된 草稿本의 존재를 확인할 것이다.

2장에서는 배식단 건립과 『장릉지』개찬이 가지는 정치사적 의미를 정조의 계승 이념과 元子の 위상 강화라는 관점에서 살펴볼 것이다. 단종 사적이 가

4) 윤정, 2004.9 앞의 논문

지는 핵심적인 의미는 ‘君臣의 分義’로 집약되며, 정조에게 이는 어린 원자의 위상을 강화하는 작업과 밀접히 연결된 것으로 판단된다.

2. 配食壇 건립과 『莊陵誌』 개찬

1) 配食壇 건립의 배경과 과정

숙종과 영조대에 걸쳐 端宗과 諸臣에 대한 추복이 단계적으로 실현됨에 따라 관련 사적에 대한 정비도 본격적으로 이루어졌다.

1733년(영조 9)에는 장릉에 비석을 세웠다. 이 해 9월 영월부사를 역임했던 尹陽來는 장릉에 望柱와 武人石만 있고 비석이 없음을 지적하고, 후대에도 陵寢임을 알 수 있도록 咸鏡道에 있는 諸陵(穆祖·翼祖·度祖·桓祖와 그 妃의 능)에 준하여 장릉에도 비석을 세울 것을 요청하였다.⁵⁾ 영조가 이를 수락하자 윤양래는 다시 자신이 재임할 때 세운 寧越戶長 嚴興道⁶⁾의 비석을 좋은 품질로 교체할 것을 요청하였다.

이에 대해 영조는 “영월 수령도 嚴戶長의 비석을 세웠는데, 나라에서 능침에 아직도 비석을 세우지 못한 것은 부끄러운 일⁷⁾”이라며 곧바로 시행을 명하였다. 이에 따라 비석을 세우는 작업이 진행되어 이듬해 마무리되었다.⁸⁾ 영조의 지적은 이후 단종 사적의 정비 작업이 적극적으로 전개될 것임을 시사한다.

1758년(영조 34)에는 諸臣에 대한 대대적인 포증과 함께 사적 정비 조치가 있었다. 이 해 10월 영조는 장릉을 奉審하고 돌아온 예조판서 洪象漢에게 살피고 온 내용을 직접 보고하도록 하였다. 이 때 영조는 단종이 復位된 干支가 이 달 28일과 같은 데 興感하여 祭文을 親製하고 大臣을 보내 제사를 攝行하

5) 『英祖實錄』권34, 영조 9년 6월 戊辰

6) 嚴興道는 영월의 향리로서 단종 사후 그 시신을 수습하여 장례를 치렀다고 전해지며, 단종 복위와 함께 포증을 입었다.

7) 『英祖實錄』권34, 영조 9년 6월 戊辰 “寧越守猶立嚴戶長碑 國家陵寢 尙不堅碑 誠有媿焉”

8) 1736년(영조 10) 2월 담당 관원들에 대한 賞典 논의가 있었던 데서 이 즈음에 立碑 작업이 마무리되었음을 알 수 있다(『英祖實錄』권37, 영조 10년 2월 乙亥).

도록 명령한 뒤, 彰節書院을 보수하도록 하였으며,⁹⁾ 사육신을 正卿으로, 嚴興道を 亞卿으로 각각 증직하였다. 또한 박팽년과 엄홍도의 후손을 錄用하며 愍忠祠를 중건하고¹⁰⁾ 金宗瑞 등 三相에 대해 특별히 시호를 내릴 것을 지시하였다.¹¹⁾

영조는 이들 사적에 대해 “이와 같은 사람들이 이와 같이 절개를 세운 것은 지나간 역사에서는 들어보기가 어려운 것이다”¹²⁾라고 하여 그 의미를 높이 평가하였다. 이러한 영조의 관심과 평가는 이후 단종 제신에 대한 포증이 확대되고 관련 사적이 정비되는 출발점이 되었다.

1763년(영조 39) 9월에는 단종 유배지인 淸泠浦에 비석을 세웠다. 당시 禮曹堂上으로 장릉을 봉심하고 돌아온 李激은 淸泠浦가 단종의 거처하던 옛 터임에도 황폐해 있다고 지적하며 立碑하여 표지할 것을 요청하였고, 영조는 이를 수락하였다.¹³⁾ 이 조치는 앞서 장릉에 비석을 세워 표지를 삼은 것의 연장이었다.

1770년(영조 46)에는 雲南君 李楷이 상소하여 단종비 定順王后의 능인 思陵에도 비석을 세울 것을 요청하였다. 당시 이진은 “능의 이름을 追上하니 곧 莊陵과 思陵이요, 象設은 모두 厚陵과 敬陵의 의례를 따랐네[陵名追上卽莊思象設皆從厚敬儀]”라고 한 숙종의 御製詩를 인용하며 장릉과 사릉의 의리가 한 가지임을 설명하고,¹⁴⁾ 乙亥年(1755, 영조 31)에 厚陵(定宗과 定安王后)과 敬陵(德宗과 昭惠王后)에도 비석을 세운 것을 지적하였다. 영조는 먼저 貞陵(太祖

- 9) 彰節書院은 1685년(숙종 11) 死六臣의 위패를 봉안하기 위하여 六臣祠로 창건되었다. 1705년(숙종 31) 장릉 밖으로 移建하면서 彰節祠로 개칭하였으며, 1788년(영조 12)에 서원으로 승격되었다.
- 10) 愍忠祠는 단종이 서거할 때 따라 죽었다는 侍女들의 영혼을 위로하기 위해 1742년(영조 18)에 세운 사당이다.
- 11) 이로부터 사흘 뒤 死六臣과 三相에게 ‘忠’자가 들어가는 시호를 주도록 하였다(『英祖實錄』권92, 영조 34년 10월 庚申).
- 12) 『英祖實錄』권92, 영조 34년 10월 丁巳 “此等之人 此等立節 往牒罕聞”
- 13) 『英祖實錄』권102, 영조 39년 9월 辛未
이 비석은 ‘端廟在本府時遺止’라 새긴 것이다. 정조는 1796년(정조 20)에 寧越 淸泠浦의 御筆 碑閣을 觀察使와 禮曹堂上이 함께 봉심하라고 명하기도 하였다(『正祖實錄』권45, 정조 20년 12월 戊寅).
- 14) 이 어제의 제목은 『敬慕壯思兩陵』이며, 『列聖御製』권10에 수록되어 있다. 시의 전문은 “陵名追上卽莊思 象設皆從厚敬儀 早晚身親瞻拜日 微臣情禮少伸時”이다.

妃 神德王后)에 碑閣이 있는지 상고하여 보고하도록 한 뒤, 정릉·사릉 뿐만 아니라 恭陵(睿宗妃 章順王后)·順陵(成宗妃 恭惠王后)·溫陵(中宗妃 端敬王后)에도 비석이 없다 하여 차례로 비석을 세우도록 하였다.¹⁵⁾ 또한 1771년(영조 47) 영조는 단종비 송씨가 거처하던 淨業院의 옛터에 樓閣을 세우고 비석을 세우도록 명하고, ‘淨業院舊基’ 다섯 글자를 써서 내렸다.¹⁶⁾

정조대에 들어서는 영조대에 이어 제신에 대한 신원과 포증이 확대되었다. 1777년(정조 1) 河緯地의 閭門에 旌表한 데 이어¹⁷⁾ 1779년(정조 3)에는 宋德相의 건의에 따라 사육신과 함께 죽은 趙哲山을 정표하도록 하였다.¹⁸⁾ 그리고 1781년(정조 5)에는 趙重晦의 상소에 따라 그의 선조 趙旅를 증시하도록 하였고,¹⁹⁾ 1786년(정조 10)에는 전라도 유학 金益賢 등의 상소에 따라 鄭恭을 忠烈祠에 배향하도록 하였다.²⁰⁾ 1787년(정조 11)에는 충청도 진사 金世基 등의 청원에 따라 成燻를 忠賢書院에 추배하도록 하였으며,²¹⁾ 1789년(정조 13)에는 權山海의 관작을 복구시켰다.²²⁾ 이어지는 제신들에 대한 포증 작업이 다른 관련자들의 후손에게 자극을 주어 더욱 확산되었던 것이다.

이처럼 단종 제신에 대한 포증을 확대해 나가는 한편에서 단종 사적에 대한 관심과 정비 작업도 이어갔다. 영조대에는 주로 사적에 立碑하여 표지를 삼는 것이 중심을 이루었는데, 정조는 한 걸음 더 나아가 사적을 보수하거나 복구하는 작업을 진행하였다.

정조는 1788년(정조 12)에 莊陵의 洞口에 있는 六臣祠(彰節書院)가 퇴락했다고 하자 이를 수리하고 致祭하도록 명하였고,²³⁾ 1790년(정조 14)에는 단종 복위운동에 관련되어 사사된 永豐君의 묘를 修改하도록 조치하였다.²⁴⁾

15) 『英祖實錄』권114, 영조 46년 5월 甲寅

16) 『英祖實錄』권117, 영조 47년 8월 丙申

17) 『正祖實錄』권3, 정조 원년 5월 甲午

18) 『正祖實錄』권8, 정조 3년 7월 庚戌

19) 『正祖實錄』권12, 정조 5년 9월 戊辰

20) 『正祖實錄』권22, 정조 10년 9월 丁酉

21) 『正祖實錄』권24, 정조 11년 8월 壬子

22) 『正祖實錄』권27, 정조 13년 5월 癸亥

23) 『正祖實錄』권26, 정조 12년 8월 乙巳

24) 『正祖實錄』권29, 정조 14년 2월 戊辰

당시 영풍군과 부인 박씨의 묘는 고양 대자동에 있었는데, 비석이나 묘지명조차

정조의 단종 사적 정비 사업은 1791년(정조 15)에 본격적으로 이루어졌다. 이해 정월 정조는 驚梁을 지나다가 길가에 있던 사육신의 묘를 보고 직접 글을 지어 近臣을 보내 제사를 지냈고, 단종 복위의 직접적인 계기를 제공한 申奎의 후손을 등용하여 莊陵參奉에 제수하였다.²⁵⁾ 이어 錦城大君과 和義君, 漢南君 등의 후손을 불러 접견하고 그 奉祀孫을 등용토록 하였다.²⁶⁾ 이어 2월에는 단종에게 節義를 지킨 신하들의 사적을 널리 조사하기 위해 直閣 徐榮輔 등을 강화도에 보내 『世祖實錄』을 상고하여 오게 하였다.²⁷⁾

뒤이어 강원도관찰사 尹師國이 영월 子規樓의 터를 발견하고 이를 중건한 사실을 보고하였다.²⁸⁾ 정조는 자규루 터의 발견과 중건이 실록을 상고하게 한 자신의 조치와 부합하는 것으로 인식하고,²⁹⁾ 누각을 짓는 일을 국고에서 지원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李福遠에게 그 전말을 담은 기록을 짓도록 하고 蔡濟恭과 洪良浩에게는 上樑文을 지어 올릴 것을 명하였다.³⁰⁾ 또 감사에게 자규루의

없었다. 관찰사가 수축할 만한 埜域이 없다고 啓聞하자 그 동네에 祭壇을 설치하고 제사지낼 물품들을 떼어주도록 하였다.

25) 『正祖實錄』권32, 정조 15년 정월 壬辰

당초에는 특별히 臺侍로 증직하려다가 이미 승지에 증직되었다는 말을 듣고 바꾼 것이다. 이러한 정조의 행동은 숙종이 노량에서 大閱을 거행하다 사육신 복관에 이르게 된 사정과 유사하다. 후술하듯이 정조는 원자와 관련해서도 숙종을 강하게 의식하고 있었다.

26) 『正祖實錄』권32, 정조 15년 정월 辛丑

27) 『正祖實錄』권32, 정조 15년 2월 丙午

당시 考出을 담당한 徐榮輔는 처음 단종을 복위할 때 강화도에서 실록을 고출한 徐宗泰의 손자였다. 정조는 이것이 우연한 일이 아니라고 감회를 밝히기도 하였다.

28) 『正祖實錄』권32, 정조 15년 2월 辛亥

자규루는 寧越 客館 곁에 있는 누각으로 본래 이름은 梅竹樓였다. 단종은 淸泠捕의 수해로 觀風軒으로 옮겨 거처하던 중 이 누각에 올라 소쩍새 소리를 듣고 子規詞를 지었는데, 영월 사람들이 애절한 가사에 슬퍼하며 누각을 자규루라 불렀다고 전한다. 윤사국은 관내를 순찰하다 영월에 이르러 자규루를 중건하려고 그 터를 찾았으나 이미 매몰되어 어딘지 알 수 없었는데, 이튿날 화재로 객사 남쪽에 있던 인가가 소실된 자리에서 누각의 터와 계단이 드러나 중건이 이루어졌다. 경연관 李晩秀가 이를 보고하자 정조가 윤사국에게 下諭하여 그 자세한 내용을 물음으로써 중앙에 알려지게 되었다

29) 아울러 사신이 돌아와 復命한 날이 곧 자규루의 기둥을 세운吉日이었다고 지적하였다.

30) 이 글이 각기 「子規樓記」와 「子規樓上樑文」으로 현재 영월 자규루에 현판으로

모양을 그려 올릴 것을 명하였다.³¹⁾

이로부터 보름 후 정조는 장릉에 配食壇을 건립하였다. 앞서 경기도 유생 黃默 등이 상언하여 和義君 李璿의 忠孝大節이 六臣과 다를 것이 없다고 호소하고 彰節祠에 追享할 것을 청한 일이 있었다. 이에 대해 정조는 동의를 표하며 다음과 같이 언급하였다.

六臣은 실로 혁혁하고 뛰어난 사람들의 이목에 젖어 있지만 錦城大君과 和義君의 그와 같은 절의가 종실에서 나왔다는 것은 더욱 특이하고 장하지 않겠는가. 이 두 사람 이외에도 사육신에 못지 않은 사람들이 많을 것이니 이번에 追配할 때 아울러 시행하는 것이 실로 조정에서 忠節을 褒獎하는 정사에 부합할 것이다.³²⁾

정조의 지적은 충절에 대한 포장이라는 원칙을 수립하고 단종에 충절을 지킨 제신들을 발굴토록 한 것이다. 이것은 숙종대에 사육신을 추복하고 영조대에 삼상과 안평대군·금성대군을 차례로 추복한 것의 뒤를 이어 제신의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단종 사적의 정비에 중요한 전기를 마련한 것으로 평가된다.

정조는 이어 내각과 홍문관에 公私의 문헌을 널리 상고하여 올릴 것을 명하였다. 내각에서 해당 사적들을 조사하고, 사관이 실록을 상고하여 보고함으로써 단종과 관련된 제신의 사적이 알려지게 되었다. 정조는 이 내용을 정리한 『配食錄』을 편찬하도록 하였는데, 이것이 바로 『莊陵配食錄』이다.³³⁾

걸려 있으며, 그 탁본이 규장각에 소장되어 있다(奎10287 및 奎10235, 奎10281, 奎10120).

31) 이것이 『子規樓圖』로서 현재 藏書閣에 소장되어 있다(귀 K2-4383).

32) 『正祖實錄』권32, 정조 15년 2월 丙寅 “六臣固赫赫卓卓 塗人耳目 與錦城和義等 似此節義之出於宗英 尤豈不奇壯 此兩人外 亦多不下於死六臣者 今於追配之時 一體施行 實合朝家獎節褒忠之令”

실제 명령은 이보다 앞서 시달되었다.

33) 『純祖實錄』에서는 이에 대해 “端宗朝의 時事에 감격하여 친히 祭文을 지어 六臣에게 제사를 지내고, 또 순절한 신하 230인의 사적을 널리 상고한 후 莊陵 곁에 壇을 설치하여 춘추로 제사를 지냈는데, 『莊陵配食錄』이라 하고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다(『純祖實錄』권24, 순조 21년 8월 甲申). 이 배식록은 정조의 문집인 『弘齋全書』에도 수록되어 있으며, 따로 간행된 본이 규장각 등에 소장되어 있다(奎5489, 奎7878).

이어 정조는 배식단 건립을 명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다시 생각해보건대, 세상에서 말하는 생육신이나 五宗英(安平大君·錦城大君·和義君·漢南君·永豐君 : 필자주)의 높고 큰 충절은 모두 우열을 가릴 수 없이 추앙하는 형편이라 누구는 배향하고 누구는 배향하지 않는 것으로 쉽게 취사 선택해서는 안될 것이니, 별도로 예법에는 없지만 예법에 맞는 예를 찾아서 시행하는 것이 역시 옳지 않겠는가.³⁴⁾

정조의 조치는 단지 사적을 확인하는 데 그치지 않고 이들을 단종에 연계하여 제사하는 새로운 형식을 창출함으로써 충절의 내용을 분명히 드러내도록 한 것이었다. 그것은 단종 제신의 절의를 국가적으로 공인하는 작업이었으며, 특히 국왕 정조가 그 형식과 의미를 주도적으로 규정하고 있었다.

정조는 배식단의 儀節을 內閣에 비치된 『配食錄』에 따라 거행하도록 하면서 세부적인 지침까지 직접 시달하였으며, 그동안 포종에서 누락된 사람들에게 증직을 시행하도록 하였다. 또한 배식단 운영에 대해서도 절의는 같지만 성과나 귀천의 차이가 있다는 인식에 따라 別壇을 설치하도록 하였다. 이에 따라 사적이 자세치 않은 趙遂良 등 8인과 연좌되어 죽은 金承珪 등 190인은 별단에 제사지내도록 하였다. 또한 엄홍도는 正壇 31인의 다음 순서에 두도록 하고, 金時習과 南孝溫은 彰節祠(彰節書院)에 추가로 제향하도록 하였다. 더불어 祠版의 명칭을 '忠臣之位'로 하는 등 제반 사항을 지시하는 등 정조의 주도 아래 배식단 건립이 마무리되었다.

한편 자규루가 완공되자 정조는 자규루의 옛터가 수백 년 뒤에 나타난 것과 配食錄을 상고하여 정한 일이 같은 날에 맞아떨어져 의도하지 않았음에도 마음이 한꺼번에 끝렸다면 감회를 밝히고 박팽년의 후손 朴基正을 영월부사로 제수하였다.³⁵⁾

이 때 정조는 박기정에게 영월에서 기이한 소문을 채집하여 보고하도록 하였는데, 박기정은 가뭄에도 물이 마르지 않고 寒食에 물이 솟아난다는 莊陵祭井의 이야기를 보고하였다. 이에 정조는 '靈泉'이라는 이름을 내리고 비석에 그 전말을 새겨 표지로 삼도록 하였다.³⁶⁾

34) 『正祖實錄』권32, 정조 15년 2월 丙寅 “更思之 世所稱生六臣五宗英危忠大節 咸抽伯仲 有不可容易取捨於或配或否之際 則別求無於禮而合於禮之禮 而行之不亦可乎”

35) 『正祖實錄』권32, 정조 15년 3월 乙酉

이처럼 자규루 중건과 배식단 건립은 숙종대 이래 진행된 단종 제신들의 충절을 포장하는 사업의 종합이라 할 수 있다. 그리고 이에 맞추어 정조는 그동안 수집된 자료를 종합하고 고증을 더하여 체계적으로 정리한 책을 만들게 되는데, 이것이 『莊陵誌』를 개찬하여 『莊陵史補』를 편찬하는 작업이었다.

2) 『莊陵誌』 개찬과 『莊陵史補』 편찬

숙종대 이래 진행된 단종 및 제신들의 포장 작업은 2백여 년이 지난 사안이며, 復官과 旌表, 贈諡, 몰수 재산의 반환 등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제반 조치를 수반하는 것이었다.³⁷⁾ 따라서 그 근거가 되는 자료를 확보하고 그 진위를 가늠할 수 있는 고증작업이 필요하였다.³⁸⁾ 당초 사육신의 복관은 南孝溫의 「六臣傳」을 토대로 忠義의 사적을 확인하는 데서 출발하였다. 단종의 경우도 복위를 위해 관련 사적을 수집하는 작업이 이루어졌다.

1698년(숙종 24) 申奎가 처음 단종 복위를 요청하는 상소를 올렸을 때, 숙종은 사안의 중대성에 비추어 널리 조사할 것을 명하고 春秋館으로 하여금 실록을 찾아보게 하였다. 이 때 承旨 宋相琦는 文集과 漫筆 중에서 참고할 만한 文字를 조사해 넣게 할 것을 청하였다.³⁹⁾ 숙종이 이를 받아들임으로써 단

36) 이것이 靈泉碑로서 현재 장릉에 전하고 있으며, 그 탁본이 규장각에 소장되어 있다(奎10189, 奎10253).

37) 일례로 癸酉靖難 당시 숙청된 三相의 일원인 鄭某의 사촌 鄭潔은 전라도 해남으로 잠적했으며, 이후 그의 집안은 전형적인 향리가문을 형성하였다(崔承熙, 2003 「朝鮮後期 鄉吏身分 移動與否考(1) : 鄉吏家門 古文書를 통한 事例研究」, 『古文書를 통해 본 朝鮮後期 社會身分史研究』, 지식산업사, 103-105면). 이 집안의 고문서 가운데 「忠勳府謄錄(1767년)」이 있는데, 이는 영조대 삼상이 추복되면서 발급된 것이다. 필사본을 家傳하고 있음을 볼 때 양반가문임을 증명하는 데 추복된 정분의 존재와 그 근거 문서가 중요했음을 알 수 있다. 이처럼 추복은 해당자와 직계 가족은 물론 해당 가문의 법적, 사회적 생활에도 복잡한 영향을 미치는 것이었다.

38) 沈羲基는 사육신의 복권과정을 후손의 녹용, 復官과 旌表, 贈諡, 몰수 재산의 반환, 서원의 면세와 復戶, 연좌 친족의 복권의 6단계로 정리하였다(沈羲基, 1999 「死六臣 裁判과 그 復權 : 조선시대관 과거청산작업의 사례연구」, 『법제연구』17, 235면).

39) 『肅宗實錄』 권32, 숙종 24년 9월 辛丑 “東方文集及漫筆等可考文字 亦令弘文館搜入”

중 사적에 대한 광범위한 조사가 진행되었고, 아울러 실록의 謄出이 이루어졌다.⁴⁰⁾

영조 때 복관과 포장이 三相과 王子들로 확대되자 이를 뒷받침할 근거가 필요하였다. 이들 사적은 실록으로는 충분치 않았기 때문에 이를 보완할 자료가 요구되었는데, 이 때 주목된 것이 『莊陵誌』였다. 『장릉지』는 본래 寧越郡守로 재임하던 尹舜擧가 郡衙에 소장되어 있던 『魯陵錄』을 보고 이를 저본으로 내용을 보충하여 1663년(현종 4)에 편찬한 것으로 당시 이름은 『魯陵誌』였다. 그 뒤 朴慶餘와 權和가 『노릉지』를 저본으로 내용을 보충하고 단종 추복 후의 사적을 덧붙여 1711년(숙종 37) 『莊陵誌』로 간행하였다.⁴¹⁾

단종 사적의 자료로서 『장릉지』가 처음 주목된 것은 1758년(영조 34)의 일이었다. 당시 장릉을 봉심하고 돌아온 洪象漢은 영조에게 영월에서 읽은 『장릉지』에 대해 언급하였다.⁴²⁾ 며칠 뒤 영조는 승지에게 명하여 『莊陵誌』를 읽게 하고, 다음과 같은 감회를 밝힌 뒤, 死六臣과 三相에게 '忠'자를 가지고 시호를 내려 주도록 명하였다.

先朝(=숙종)의 御詩에서 “綢儀가 追擧된 날, 世廟의 德이 더욱 빛나도다[綢儀追擧日 世廟德彌光]”라는 구절이 있는데,⁴³⁾ 성상의 뜻이 탁월하여 포함한 의도를

40) 이는 영의정 柳尙運이 實錄의 謄本을 보고 魯山君으로의 강등이 宋玟壽의 變故가 있는 뒤의 일임을 고증한 사례를 통해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肅宗實錄』 권32, 숙종 24년 10월 甲子)

41) 규장각 소장본으로는 <奎3653>, <奎3683>, <一簣古 393.1-B148j>가 있다. 박경여는 사육신의 한 사람인 박팽년의 9대손으로, 단종 복위에 따라 莊陵參奉으로탁용되었으며 清河縣監을 지냈다. 권화는 그 사적이 알려져 있지 않다. 그런데 南鶴鳴의 서문에 따르면 그를 '仲記 權和'로 지칭하고 있어 박경여가 재임하던 청안현의 향리로 추정된다. 4개 조로 된 범례에는 자료의 정리 방식을 제시했는데, 綱目體에 따라 정리한다는 것, 자료의 출처를 그대로 표기하되 서로 어긋나는 것은 註로 설명해 두었다는 것, 각 설에는 그 출처를 적되 알 수 없는 경우는 비워 두어 뒷날 添錄할 수 있도록 하였다는 것, 舊誌에서 빠진 것은 年條에 따라 추록했으니 이후에 같은 방식으로 추가할 것을 바란다는 것 등이다. 이어 記事의 出處를 정리한 목록이 있는데 金石文 외에 李陜의 『松窩雜說』을 비롯한 35건의 書目を 적었다. 본문은 舊誌와 續誌의 두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42) 『英祖實錄』 권92, 영조 34년 10월 丁巳

43) 이 시는 『列聖御製』 권10에 『惟我端宗大王定順王后復位祔廟之禮(후략)』이라는 제목으로 수록되어 있다. 시의 전문은 “興言疇昔事 感淚幾沾裳 授受同堯舜 聖神遇

드러내지 아니하고 美德을 돌리려는 뜻이 있었으니, 재삼 이를 받들어 玩味하면
 흥모하고 감탄하는 마음을 이기지 못하겠다.⁴⁴⁾

이처럼 영조가 『장릉지』를 읽고 숙종의 御製詩를 떠올리며 이를 贈諡 조치
 로 연결시킨 것은 『장릉지』가 諸臣의 충의를 확증하는 전거로 인정받게 되었
 음을 잘 보여준다.

정조대에 이르러 포증이 확대되면서 그 근거로서 『장릉지』가 더욱 부각되
 었다. 1780년(정조 14) 유학 許默의 上言에 따라 修撰 許澮를 복관하고 追贈
 하는 조치가 있었다. 당시 吏曹는 윤순거의 『장릉지』와 남효온의 「육신전」에
 그에 대한 사적이 있음을 근거로 청원을 수락하도록 覆奏하였다.⁴⁵⁾ 곧 『장릉
 지』는 제신 포증을 위한 근거를 찾는 중심 자료로 공인되고 있었던 것이다.

한편 포증의 확대에 맞추어 내용을 증보하고 고증을 더하는 改撰의 필요성
 이 제기되었다. 그 계기가 된 것은 1791년(정조 15)의 子規樓 중건이었다. 당
 시 정조는 제신의 포증을 확대하면서 그 사적을 실록에서 상고하도록 하던
 중, 子規樓 중건 소식을 듣고 이를 지원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고을 안에 전해 내려오는 옛이야기가 있으면 刊本과 寫本을 논하지 말고 혹 조
 각나서 불완전한 글이라도 陵誌(장릉지)에 실리지 않은 것이 있으면 수집해서 올
 려 보내라.⁴⁶⁾

정조의 지적은 『장릉지』를 토대로 관련 사적을 추가로 수집하여 증보하려
 는 뜻을 보인 것이다.

이 조치는 단종 사적을 문헌으로 재정리하는 작업의 출발로서 『장릉지』를
 개찬하라는 명령이었다. 같은 해 4월 掌令 鄭景祚는 思陵의 사적도 함께 정리
 할 것을 청하는 과정에서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禹湯 緝儀追舉日 世廟德彌光 獲遂半生願 歡欣我獨長”이다.

44) 『英祖實錄』권92, 영조 34년 10월 庚申 “先朝御詩 有緝儀追舉日 世廟德彌光之句
 聖意卓越 含苞不路 有歸美之義 再三奉玩 不勝欽歎”

45) 『正祖實錄』권29, 정조 14년 2월 庚午

46) 『正祖實錄』권32, 정조 15년 2월 辛亥 “邑中流傳舊聞 毋論刊本寫本 或斷爛殘編
 苟有不載於陵誌者 收聚上送”

『莊陵誌』를 개찬하라는 명은 실로 그 사실이 실려 있는 책을 널리 취해서 빠뜨리는 것이 없도록 하자는 聖意에서 나온 것입니다⁴⁷⁾

위의 내용을 통해 당시 정조가 사적 수집을 통해 『장릉지』를 개찬하려고 하였음을 알 수 있다. 다만 이 때는 개찬의 필요성을 피력한 것으로, 공식적인 개찬 명령은 이보다 10일 뒤에 나왔다.

정조는 『장릉지』가 소략하다고 지적하며 玉堂의 李義鳳·朴奎淳·尹光普에게 수정 윤색하게 하고, 寧陽尉 鄭宗의 후손인 鄭厚祚가 典故에 익숙하다 하여 함께 참여하도록 하였다. 당시 이의봉은 編年體를, 윤광보는 志體를 각각 주장하여 각기 책을 찬진하였다. 이에 前承旨 李書九에게 명하여 두 책의 장점을 취해 한 책으로 만들라고 하였으나, 책은 완성되지 못하였다.⁴⁸⁾

정조는 1796년(정조 20) 다시 『장릉지』 개찬을 명하였다. 이에 앞서 李義駿과 尹光普 등이 명을 받들어 편집하였으나 미처 교정하지 못하였으므로 다시 이들에게 刪削하여 다듬도록 한 것이다.⁴⁹⁾ 이 작업 결과로 완성된 것이 『莊陵史補』(奎貴3684)이다.

그런데 현재 규장각에는 『장릉지』 개찬과 관련된 몇 종의 책이 소장되어 있다. 이들을 검토함으로써 개찬 과정을 보다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우선 주목되는 것은 『莊陵謄錄』(奎12974)이다. 『장릉사보』 편찬으로 마무리된 『장릉지』 개찬 작업 과정과 관련 사적을 정리한 謄錄으로, 정조의 왕명으로 진행된 단종 사적 정리 사업의 총 결산에 해당한다. 그 내용 중 권7의 「編書始末」은 정조의 개찬 명령 이후 『장릉사보』 편찬에 이르는 작업 과정을 정리한 것이다. 이를 통해 『장릉지』 개찬 작업의 전말과 그 산물로 정리된 책의 체재 등을 살필 수 있다.

앞서 정리했듯이 『장릉지』 개찬에 따라 정리되었을 것으로 파악되는 책으로는 다음이 있다.

① 1791년(정조 15) 이의봉이 編年體로 정리한 것

47) 『正祖實錄』권32, 정조 15년 4월 癸亥 “莊陵誌改纂之命 實出博取該載 靡有闕遺之聖意”

48) 『正祖實錄』권32, 정조 15년 4월 癸酉

49) 『正祖實錄』권44, 정조 20년 5월 乙丑

- ② 同年 윤광보가 志體로 정리한 것
- ③ 同年 李書九가 ①과 ②의 장점을 취하여 합쳐 정리한 것(미완성)
- ④ 1796년(정조 20) 李義駿과 尹光普 등이 편집한 것
- ⑤ 同年 ④를 교정하여 마무리한 것

이 중 ⑤가 전술한 『장릉사보』인데, 나머지에 해당하는 책들도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 때 ③은 완성되지 못하였으므로 책으로 만들어지지 못하였을 것이고, 관련 자료가 있다 하더라도 ④의 작업이 이를 이용하였을 것이므로 ③과 ④는 하나로 파악할 수 있다. 따라서 개찬 저본이 되는 『장릉지』와 개찬 결과물인 『장릉사보』 외에 3종의 초고본이 있었던 셈이다.

이것은 순조대의 기록을 통해서도 확인된다. 1807년(순조 7) 寧越府使 朴奎淳은 『莊陵誌續編』을 찬진하고 印刊해 廣布할 것을 청하였고, 순조는 內閣으로 하여금 該道에 분부해 간행해 올리도록 하라고 명하였다. 이 때 檢校直閣 洪奭周는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옛날 先朝 때 일찍이 故判書 尹光普와 故參判 李義鳳에게 『莊陵誌』를 나누어 撰進하라 명하고, 또 여러 신하들에게 명하여 두 本을 취하여 합해 하나로 만들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宙舍樓에 간직해 둔 한 본을 『莊陵史補』라고 일컬었습니다. 무릇 이 여러 본들은 모두 睿裁에 仰稟하였습니다.⁵⁰⁾

위에서 홍석주는 기존에 편찬된 『장릉지』 관련서의 현황을 제시하고 있는데, 이를 통해서도 이의봉과 윤광보가 각기 나누어 찬진한 것과 제신들이 양자를 합친 것, 그리고 『장릉사보』 등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규장각에는 위의 초고본으로 판단되는 몇 종의 책이 전하고 있는데, 아래에서는 이의 구체적인 내용을 실록의 기사와 대비하여 검토함으로써 각 서적의 구체적인 성격을 확인해 보기로 한다.

(1) (改撰)莊陵誌 (奎12873)

제목은 ‘莊陵誌’이나 박경여와 권화가 편찬한 『장릉지』와는 내용이 다르다.

50) 『純祖實錄』권10, 순조 7년 11월 壬寅 “昔在先朝 嘗命故判書尹光普故參判李義鳳分撰莊陵誌以進 又命諸臣 取兩本 合成一件 而又有了一本之奉藏於宙舍樓者 以莊陵史補爲稱 凡此諸本 率皆仰稟睿裁”

‘玉堂本’이라는 藏書記가 있으나 1책만 남아 있는 零本이다. 서두에는 14개 조로 된 凡例가 있다.⁵¹⁾ 목차에 따르면 체재는 圖說과 권1의 事實, 권2의 復位, 권3의 壇墳, 遺蹟, 題記, 권4 및 5의 附錄으로 구성되어 있다. 본문 내용은 정조 연간을 포함하고 있으나 『장릉사보』에 비해 소략하여 『장릉사보』에 앞서 정리된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장릉등록』의 「편서시말」에 따르면 정경조의 상소로 『장릉지』의 개찬이 결정되었고, 1791년 5월에 윤광보·정후조·박규순 등과 이의봉이 각기 『장릉지』를 찬진했으며, 이서구와 박기정이 이를 校正 검토하였다고 한다. 이때 윤광보 등이 찬진한 책은 志體를 따른 것으로서 권수에 圖說이 있고 이어 事實·復位·壇墳·遺蹟·題記와 附錄 등 6개 항목으로 되어 있다고 밝혔는데, 이것은 본서와 체재와 일치한다. 이를 통해 본서가 당시 윤광보가 개찬한 『장릉지』임을 알 수 있다.

(2) 莊陵事略 (奎 7780)

표제는 ‘實臚出別單’이라고 되어 있으며, 그 오른쪽에 붉은 글씨로 ‘莊陵事略’이라고 後寫되어 있다. 필사본으로 서발이나 범례가 전혀 없어 그 성격이나 편찬 시기를 판단하기 어렵다.

그런데 「편서시말」에서 당초 작성된 두 초고본에 대한 설명을 보면, 이의봉이 편년체로 찬술한 것은 「端廟始末」을 기록한 紀年 2편과 「莊思兩陵崇奉事實」, 「諸臣褒贈恩教」 및 배식단 건립을 정리한 續編 3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강목을 나누어 고열할 수 있도록 하였다고 하였다.

그런데 본서의 내용은 英祖 甲寅年, 곧 1734년(영조 10)부터 정리되어 있으며, 이로부터 정조 연간까지 시간 순서로 기술되어 있고, 「자규루기」를 비롯한 記文이나 祭文 등 관련된 글들이 각각에 부록되어 있다. 이것은 「편서시말」에서 이의봉이 찬진한 것에 대해 언급한 것과 부합한다.

이로 미루어 본서가 바로 이의봉이 찬진한 또 하나의 『장릉지』일 것으로

51) 범례의 주요 내용은 1539년(중종 34) 李若水이 魯山君의 立後를 요청한 일까지 수록했다는 것과 『國朝寶鑑』과 實錄에 의거하여 방증했다는 것, 製進文은 반드시 찬자의 성명을 기입했다는 것, 褒贈 인사는 부록에 신고 諸臣의 사적은 중복을 피했다는 것 등이다.

추정된다. 다만 영조 10년 이전의 사적도 포함되었을 것이므로 본서는 당초에 찬진된 것 중 후반부에 해당하며 앞의 1-2책 정도가 결본된 것으로 보인다.⁵²⁾

(3) 莊陵誌補初稿 (奎 1944)

기존 목록과 해제에서는 『장릉사보』에 포함되어 있다. 표지서명이 ‘莊陵誌補初稿’로 『장릉사보』~완성에 앞서 작성된 초고로 판단된다는 점에서 『장릉사보』와는 구분해야 한다.

『편서시말』에 따르면 윤광보 등과 이의봉이 각기 찬진한 『장릉지』를 이서구로 하여금 교정토록 하였다는 내용이 있고, 그 다음 기사인 1796년(정조 20) 5월 11일의 傳敎에는 다음과 같이 개찬 작업의 마무리 과정이 제시되어 있다.

『莊陵誌』를 編輯하라는 명령을 내린 지 이미 오래되어 兵曹參知 李義駿과 前承旨 尹光普 등의 編이 거의 탈고되었으나 宰臣 李書九가 湖南에 監司로 나가는 바람에 오직 校正하는 한 가지 일만 미처 하지 못하였다. 오늘 編置한 本을 보니 하루 이를 정도만 소요하면 공역을 마무리할 수 있겠다. 行護軍 李書九는 그대로 編堂으로 차임하고 兵曹參知 李義駿과 함께 손질하여 던져 두는 것이 없도록 하고 前承旨 朴基正도 함께 검토하도록 하라.⁵³⁾

위의 내용은 앞서 완성하지 못했던 합본 작업의 재개를 지시하는 것으로 기존 작업의 상태를 반영하고 있다.

이튿날 이서구 등이 『노릉지』~중에 의심되는 곳이 있다고 하자 정조는 鼎足山の 실록을 고출하도록 하였고, 이에 同春秋 金魯永이 고출 내용을 정리한

52) 윤광보와 이의봉이 찬진한 것은 일종의 시안으로서 정식 장정은 이루어지지 않았고 따라서 ‘장릉지’ 외에 별도의 서명이 부여되지는 않았을 것이다. 그렇다면 현재의 표지 서명은 본래의 것은 아니라고 판단된다. ‘實贍出別單’이라는 서명은 본서 말미에 숙종 때의 실록 고출에 대한 기록이 있는 것에 근거한 것으로 보이며, ‘莊陵事略’이라는 서명은 실제 책의 내용이 실록 고출에 국한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나중에 수정한 것이라 짐작된다.

53) 『莊陵贍錄』 권7 編書始末 “莊陵誌編輯 成命已久 兵曹參知李義駿 前承旨尹光普等 編役 幾皆脫囊 而因宰臣李書九之出按湖南 獨於校正一事 未及爲之 今日見編置之本 若費一兩日 可以訖工 行護軍李書九 仍差編堂 如兵曹參知李義駿 眼同淘洗 無或拋置 前承旨朴基正 亦令同爲看檢”

別單을 올렸다. 그리고 24일에 이서구가 『장릉지』9권을 완성하여 바쳤는데, 이것이 곧 『장릉사보』이다.

이 때 정조의 전교를 보면, 당초에 개찬한 것을 토대로 재정리한 초고본, 곧 정조가 열람하고 금방 교정할 수 있다고 한 ‘編置한 本’이 있었는데, 본서가 바로 이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어 이를 토대로 실록 고출 내용을 반영하여 『장릉지』~개찬 최종본, 곧 『장릉사보』가 완성되었는데, 이에 맞추어 본서는 ‘莊陵誌補初稿’를 지칭한 것이다.

한편 앞서 언급한 순조 때의 기록에 따르면 朴奎淳이 찬진한 『莊陵誌續編』이 있음을 알 수 있다. 현재 장서각에 소장된 『莊陵誌續編』(K2-4482)이 바로 이 책으로 판단된다. 序跋이나 刊記가 없어 기존 목록에서는 편찬자와 편찬 연도를 모두 미상으로 처리하고 있다. 그런데 서두에 수록된 凡例의 제1조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들어 있다.

英祖 10년 甲寅부터 當宁(=純祖) 6년 丙寅까지 73년 동안에 崇奉하고 修改한 儀文은 극진히 하지 않은 것이 없으나 御製祭文과 傳敎는 단지 謄錄에만 수록되어 있고 陵邑에 산재하므로 모두 수집 분류하여 舊誌를 續한다.⁵⁴⁾

이 범례에서 수록내용이 순조 6년까지라고 한 부분은 순조 7년에 朴奎淳이 『莊陵誌續編』을 찬진한 사실과 부합하고, 책의 제목 또한 일치하고 있다.⁵⁵⁾ 따라서 장서각 소장 『장릉지속편』이 바로 1807년(순조 7)에 박규순이 찬진한 것임을 알 수 있다.⁵⁶⁾

이상에서 살펴보았듯이 1791년(정조 15) 장릉에 배식단을 건립하여 단종과 제신의 ‘分義’를 확정하는 작업과 함께 이를 공인하는 국가의 입장에서 자료적 근거를 확립하는 작업으로서 『장릉지』~개찬을 추진하였다. 이 작업은 1796년(정조 20) 『장릉사보』~편찬으로 결실을 보았는데, 개찬 과정에서 만들어진 초고본 3종이 현재 규장각에 소장되어 있으며, 순조 때 편찬된 『장릉지속편』이

54) 『莊陵誌續編』~凡例, “英宗十年甲寅 至當宁六年丙寅 七十三年之間 崇奉修改之儀文 靡不用極 而御製祭文如傳敎 只載謄錄 散在陵邑 故一並哀集類聚 以續舊誌”

55) 표지에는 ‘莊陵誌’라는 제호 밑에 작은 글씨로 ‘續編’이라고 부기하고 있다.

56) 순조대 편찬된 『莊陵誌續編』의 내용과 성격에 대해서는 별고에서 다룰 것이다.

장서각에 소장되어 있음이 확인된다.

3. 正祖의 繼述 이념과 ‘君臣分義’의 확립

1) 正祖의 肅宗·英祖 繼述 이념

숙종-영조대에 걸쳐 진행된 단종 추복과 제신 포증은 ‘君臣의 分義’를 확증하고 繼述을 통한 체제 정비의 이념적 근거를 제시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었다. 정조가 즉위 후 제신들에 대한 포증을 확대하고 사적을 정비하는 한편, 『장릉지』를 개찬하여 관련 기록을 정리한 것도 그 연장선에 있었다.

정조는 즉위 직후부터 영조의 권위를 통해 자신의 왕권을 강화하려는 지향을 보였으며, 이를 선왕의 뜻을 이어 일을 풀어나간다는 繼述(=繼志述事)의 이념으로 제시하였다. 이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가 『國朝寶鑑』 편찬이다.

정조는 1781년(정조 5) 『英祖實錄』을 편찬한 후 寶鑑의 편찬을 명하여 이듬해 11월 작업을 마쳤다. 처음에는 영조의 보감을 만드는 작업으로 시작하였으나 점차 작업을 확대하여 기존에 빠진 12조의 보감을 모두 편찬하였다.⁵⁷⁾

그는 같은 史書임에도 실록과 별도로 보감이 있어야 하는 이유에 대해 이용하는 초점이 서로 다르다는 것으로 설명하였다.

名山에 보관하여 天下 萬世를 기다리는 것은 實錄이다. 그 가운데 謨訓과 功烈이 큰 것을 특별히 써서 밝게 드러내어 後嗣王의 法이 되는 것이 寶鑑이다. 그러므로 실록은 秘藏하나 寶鑑은 드러내며, 實錄은 훗날을 기약하나 寶鑑은 지금에 절실하다.⁵⁸⁾

곧 실록만으로는 현실 정치에 원용하는 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보감이 필요하다고 인식한 것이다. 그는 『世宗實錄』이 150여 권인 데 비해 세종의 보감

57) 『國朝寶鑑』의 편찬과정과 성격에 대한 개괄적 검토로는 鄭亨愚, 1982 『國朝寶鑑의 編纂經緯』, 『東方學志』33 참조.

58) 『國朝寶鑑監印廳儀軌』 御製序 “藏之名山 以俟天下萬世者 實錄是已 取其謨訓功烈之大者 特書而昭揭 爲後嗣王法者 寶鑑是已 故實錄秘 而寶鑑彰 實錄期乎遠 而寶鑑切於今”

이 2권에 불과한 것은 선왕의 盛德을 기술하는 데 주안점을 두었기 때문으로 이해하였다.⁵⁹⁾ 실제 편찬 원칙에서도 뛰어난 업적은 특별히 크게 쓰도록 하거나 영조의 경우 실록에서 서술하지 않았던 내용도 添入케 하는 등⁶⁰⁾ 적극적으로 국왕의 업적과 功烈을 드러내고자 하였다. 이는 물론 정치의 중심으로서 국왕의 위상을 부각시키려는 의도였다.

정조가 『국조보감』에 주목한 또 하나의 이유는 이 책이 가지고 있는 역사성 때문이었다. 정조는 자신의 『국조보감』 편찬이 가지는 의미를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대저 寶鑑의 책은 光廟 庚午年⁶¹⁾에 이루어졌는데, 四朝의 덕행을 두루 서술하여 합쳐서 1帙의 책을 만들었다. 생각컨대 이 같은 義例는 대개 이던 編次를 이어가게 하려는 은미한 뜻이 들어 있다. 그 뒤 宣廟·肅廟 兩朝의 寶鑑 이외에는 지금껏 겨를이 없었던 것인가? (중략) 이제 先朝의 보감을 합쳐서 이듬하여 『국조보감』이라고 했으니, 嗣後(정조)가 이로써 編補한 것은 肅廟에서 『列聖御製』를 편수하고 先朝(영조)에서 『列聖誌狀』을 편수한 故事와 같게 한 것이니 이것이 혹 列朝에서 미처 하지 못한 志事를 追述하는 것이 아니겠는가?⁶²⁾

위에 나타난 정조의 평가는 “志事를 追述하는 것”, 곧 ‘繼志述事(繼述)’라는 개념으로 집약되고 있다. 보감은 세조 때 太祖·太宗·世宗·文宗 등 四朝의

59) 『正祖實錄』 권12, 정조 5년 7월 庚戌

60) 『國朝寶鑑監印廳儀軌』 『編纂廳事實』 辛丑年(1781, 정조 5) 8월 29일

61) 庚午年은 1460년(세조 7)이나 실제 세조의 보감 찬집은 1457년으로 『정조실록』 국역본에서는 이를 丁丑年(세조 3)으로 교감하였다. 이는 세조의 지문에 『국조보감』이 정축년에 이루어졌다는 내용이 있는 데 따른 것이다. 그런데 『세조실록』에 따르면 세조 3년 정월에 『국조보감』의 찬수를 명하였고(『世祖實錄』 권6, 세조 3년 정월 癸酉), 이듬해에는 書筵官에게 잔치를 내려주면서 『國朝寶鑑』 修撰官에게도 잔치를 내려주었다(『世祖實錄』 권11, 세조 4년 정월 己丑). 그리고 세조 7년에는 팔도에 반포한 『국조보감』을 거두어들이라는 명령이 있었다(『世祖實錄』 권24, 세조 7년 4월 壬午). 이로 보아 세조 3년은 찬수 명령이 내려진 것이고, 7년 즈음에 완성되어 반포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면, 원문의 내용대로 庚午年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62) 『正祖實錄』 권12, 정조 5년 7월 庚戌 “大抵寶鑑之書 成於光廟庚午年 而歷敘四朝德行 合成一帙之書 竊義例之如許 蓋欲繼是編次之微意存焉 厥後宣廟·肅廟 兩朝寶鑑外 未遑至今耶 (중략) 況今先朝寶鑑 合而名之曰國朝寶鑑 嗣後以此編補 如肅廟編列聖御製 先朝編列聖誌狀之故事 則是或爲追列朝未遑之志事者耶”

寶鑑을 만든 데서 출발하였는데,⁶³⁾ 그 뒤 숙종이 『宣廟寶鑑』을, 영조가 『肅廟寶鑑』을 만들었다. 이 때문에 정조에게 있어서 보감은 선왕인 숙종과 영조의 사업을 계승하는 매개가 되는 것이었다.

여기서 정조는 두 측면에서 숙종과 영조에 대한 계술의 이념을 드러내고 있다. 우선 세조 이후 보감을 편찬한 숙종과 영조의 사업을 계승하는 의미를 가진다. 정조는 보감을 계속 편찬하라는 세조의 은미한 뜻이 있었음에도 그동안 두 보감을 제외하고는 이루이지지 않은 것에 문제의식을 토로하고 있다. 숙종과 영조가 각기 보감을 찬수한 것은 세조의 뜻을 계승하는 것이며, 정조의 조치 또한 그 연장에 있었다. 곧 정조의 『국조보감』 편찬은 세조에 대한 계술이자 가깝게는 숙종과 영조에 대한 계술인 것이다.

또한 정조는 “옛날에 『經國大典』을 완성하고 나자 세조께서 뜻하신 사업을 이루었다 하여 세조의 사당에 고한 일이 있었다. 그렇다면 이 보감이야말로 어찌 열성조의 뜻한 사업 중에 큰 것이라고 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⁶⁴⁾라고 자평하고, 『경국대전』의 예를 따라 책이 완성된 후 종묘의 各室에 고하였다.⁶⁵⁾ 정조는 『국조보감』의 완성이 세조에 대한 계술이자 숙종과 영조를 이어 사업을 완성한 것임을 의례를 통해 구체적으로 드러내고자 한 것이다.

이는 물론 『경국대전』을 편찬하여 조선의 국가체제를 건설한 세조와 이를 변통하여 『受教輯錄』, 『典錄通考』를 편찬한 숙종, 『續大典』을 편찬한 영조를 계술하여 『大典通編』을 만든 것과 같은 선상에 있었다.⁶⁶⁾ 이 사업을 통해 정조는 정치의 중심이자 열성조의 계승자로서 자신의 정치적 위상을 극명하게 드러낼 수 있었던 것이다.

아울러 정조는 숙종과 영조가 先王의 사적을 다각적으로 정리했다는 점을 지적하며, 이를 계승하여 후대의 국왕에게도 이어가게 하겠다는 뜻을 표명하였다. 곧 『국보조감』 편찬을 숙종의 『列聖御製』, 영조의 『列聖誌狀』처럼 선왕

63) 이에 대해서는 정재훈, 2002 「國朝寶鑑을 통해 본 朝鮮前期의 政治思想」, 『國史館論叢』100 참조.

64) 『國朝寶鑑監印廳儀軌』 「國朝寶鑑總敍」 “昔者 經國大典既成 以世祖志事之成 告獻于世祖廟 寶鑑豈非列朝志事之大者乎”

65) 『正祖實錄』 권14, 정조 6년 11월 己未

66) 영조의 법전편찬과 繼述의식의 상관성에 대해서는 윤정, 2004.9 앞의 논문, 104-111면 참조.

사적을 총괄 정리하는 작업으로 평가하고 있다. “列朝에서 미처 하지 못했던 志事를 추후에 행하는 것”이라는 自評에서 단적으로 표현되어 있듯이 정조는 자신의 사업을 선왕의 사업에 대한 계승로서 부각시키고 있었다.

이와 같은 정조의 지향은 단종 사적의 정비에서도 동일하게 구현되는 것이었다. 숙종-영조대 단종과 제신의 추복은 세조의 본의를 실현한다는 명분이 부여되어 있었다. 세조의 뜻과 숙종·영조의 계승, 그리고 그것을 계승하여 완성하는 정조의 역할이라는 점에서 『국조보감』 편찬과 단종 사적 정비는 같은 궤를 타고 있었다.

실제 정조는 제신에 대한 포증을 확대하면서 그 의미를 숙종과 영조에 대한 繼述로 설정하고 있었다. 1790년(정조 14) 영풍군의 묘를 修改하면서 다음과 같이 밝힌 것은 단적인 사례이다.

永豐의 일에 대하여 삼가 슬프고 가혹하게 여긴다. 예전 肅廟 때에 莊陵을 追復하면서 有司에게 명하여 절개를 지킨 錦城大君·和義君·漢南君 같은 왕자들을 모두 六臣과 寧陽尉 鄭宗을 褒贈한 典例를 따라 禮로써 改葬하고 좋은 諡號를 주게 하였는데, 영풍군도 그 속에 있었다. 그런데 여러 사람들이 다 받았으나 오직 영풍군에게 시호를 내리고 무덤을 손질하는 일만 홀로 누락되었다. 이에 先朝 甲寅年(1734, 영조 10)에 禮葬과 延諡에 필요한 물건들을 주라고 명하였으나 여전히 시행되지 않고 있다.⁶⁷⁾

영풍군 李璵는 세종의 후궁인 惠嬪 楊氏의 소생으로, 혜빈 양씨는 단종 출산 후 死去한 문종비 권씨를 대신하여 단종을 보양하였다. 이런 연유로 영풍군은 단종 복위운동에 참여하여 사사되었다.

1712년(숙종 38) 영풍군의 官爵과 封號를 회복시켰고,⁶⁸⁾ 이듬해 시호를 내리도록 하였으며,⁶⁹⁾ 영조대에도 시호를 내린 것이 확인된다.⁷⁰⁾ 곧 금성대군

67) 『正祖實錄』 권29, 정조 14년 2월 戊辰 “於永豐事 竊爲之傷側歎賞 昔在肅廟 追復莊陵 命有司 勅節諸王子如錦城大君·和義君·漢南君 皆用六臣及寧陽尉鄭宗褒贈之典 以禮改葬 賜美諡號 永豐在其中 諸家皆受之 惟永豐易名與賁隧之舉 獨漏焉 先朝甲寅 命給禮葬延諡之需 猶未果行”

68) 『肅宗實錄』 권51, 숙종 38년 4월 庚辰

69) 『肅宗實錄』 권53, 숙종 39년 4월 己酉

70) 『英祖實錄』 권57, 영조 19년 4월 丁酉

등과 같이 왕자들의 예에 따른 복권 조치가 이루어진 것인데, 실제로는 정조 대까지도 실행되지 않고 있었다. 따라서 정조가 영풍군에 대한 은전을 시행하는 것은 숙종과 영조가 뜻하였으나 미처 이루지 못했던 일을 실행하는 의미를 가지게 되는데, 이는 계술의 의미를 잘 보여주는 것이다.⁷¹⁾

또한 단종 관련 사적을 정비하고 표지를 세우는 작업도 같은 맥락에서 설명되고 있었다. 영조는 장릉에 비석을 세울 때 “陵寢이 있는 곳이 아주 멀고 또 聖考께서 追復하신 데는 뜻이 있으니 그것을 계술하는 道에 있어서 文跡이 없을 수 없다”⁷²⁾라고 하여 그 의미를 숙종에 대한 계술의 관점에서 설명하였다. 그리고 이것은 청령포에 어필 비각을 세우는 것으로 구현되었다. 정조가 子規樓를 중건하면서 記를 짓도록 한 것이나 莊陵의 祭井에 靈泉이라는 이름을 내리면서 비를 세워 표지를 삼도록 한 것 역시 문적을 남기려는 조처였던 것이다.

이 때문에 朴基正은 영천비의 비문에서 정조의 자규루 중건 및 배식단 건립이 繼志述事의 구도에서 전개된 것임을 칭송하고 있다.

또한 반드시 우리 聖上의 繼志述事를 기다려 枉屈함을 밝히고 꺾으로써 신령한 응답을 불러오고 和氣를 이끌어 온 연후에 자취의 奇瑰하고 異常한 것도 모두 밝혀 어두운 것이 없게 된 것이니 누가이 복구된 것과 샘이 이름을 얻은 것도 또한 기이한 일인 것이다.⁷³⁾

박기정의 지적은 정조가 제신들에 대한 포장을 확대한 일을 가리키는 것으로, 이것이 숙종-영조대에 전개된 일련의 추복 조치를 계술하는 것이라 평가

71) 한편 1789년(정조 13)에 慶州의 유학 權宗洛은 상소에서 “英宗大王께서 先王의 盛德을 본받아 生六臣과 死六臣에게 모두 증직하고 정려를 세워주셨는데, 지금 聖上께서 또 生六臣에게 시호를 내려주셨습니다”라고 하면서 은전을 입지 못한 12대조 權山海의 관직을 회복할 것을 요청했고, 정조는 이를 받아들여 靑山海의 職을 회복시켰다(『正祖實錄』 권27, 정조 13년 5월 癸亥). 정조의 직접적인 언급은 아니지만 이를 통해 당시 정조의 제신 포증이나 사적 정비가 숙종과 영조에 대한 계술의 의미를 가지고 있음을 엿볼 수 있다.

72) 『英祖實錄』 권34, 영조 9년 6월 戊辰 “陵寢所在絶遠 而且聖考所以追復者有意 其在繼述之道 不可無文跡”

73) 『莊陵靈泉碑』 “然亦必待我聖上繼志述事 昭枉伸屈 感召靈應 導達和氣 而後跡之奇瑰異常者 畢彰靡晦 樓以之名 泉以之名 吁亦異矣”

하고 있다.

특히 배식단 건립은 숙종이 장릉 사적을 정비하면서 그 의리로 제시했던 “군신이 같이 제사를 받는다”라는 의미를 극대화한 조처였는데, 이는 정조의 다음 지적에 잘 나타나 있다.

지난 肅宗 戊寅年(1698, 숙종 24)에 莊陵을 追復했을 때 조정의 신하가 육신의 사당이 丁字閣과 너무 가깝다는 말을 하자, 숙종께서 “武侯의 사당 건물이 길어 근처에 있네[武侯祠屋長隣近]”라는 杜甫의 詩句를 인용하면서 헐어버리지 말라고 하셨으나, 논의가 엇갈려 끝내는 옮겨 세우고 말았으니, 이것이 어찌 잘못된 일이 아니겠는가.⁷⁴⁾

여기서 숙종은 杜甫의 시를 인용한 사실을 정조가 다시 적시하고 있는데,⁷⁵⁾ 이는 매우 중요한 상징성을 가지고 있다.

숙종 때 국왕의 묘역 안에서 신하가 제사를 받게 할 수 없다는 논리에 따라 장릉 근처에 있는 사육신 사당을 옮겨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대해 숙종은 昭烈帝 등의 영내에 武侯(諸葛亮)의 사당이 있는 고사를 두고 “一體君臣祭祀同”이라고 한 杜甫의 시를 인용하며 그대로 두어도 무방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이 문제를 재차 논의한 대신들의 의견이 찬반으로 갈리자 숙종은 다음과 같이 입장을 표명하였다.

園陵의 嚴敬한 道로써 말한다면 실로 미안한 일이 되지만, 神理와 人情이 서로 먼 것이 아니어서 狀啓를 보자 곧 杜甫의 시를 생각하게 된 것이다. 옮기는 것이 옳은지 알지 못하겠다.⁷⁶⁾

74) 『正祖實錄』권32, 정조 15년 2월 丙寅 “往在肅廟戊寅追復莊陵也 筵臣以六臣祠 太近於丁字閣爲言 引杜甫詩武侯祠屋長隣近之句 命勿毀 因岐貳之議 竟未免移構 是非欠事也”

75) 1798년(정조 22)에 왕명으로 편찬된 『杜律分韻』을 비롯해 두보의 시가 정조대에 집중적으로 편찬되는 것 역시 이와 같은 정조의 의식과 무관하지 않다. 『杜律分韻』의 자세한 내용은 강혜선, 2000 「杜甫의 시선집 杜律分韻」, 『정조의 시문집 편찬』, 문헌과해석사 참조.

76) 『肅宗實錄』권32, 숙종 24년 11월 庚子 “以園陵嚴敬之道言之 固爲未安 而神理人情 不甚相遠 見狀啓 卽思杜甫之詩矣 移建未知其可也”

여기서 숙종이 육신의 사당을 그대로 두도록 한 조치에 杜甫의 시가 상징적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한편 1758년(영조 34)에도 같은 문제가 제기되었다. 당시 장릉을 봉심하고 돌아온 洪象漢은 장릉의 火巢 안에 자리한 死六臣의 彰節祠를 옮길 것을 요청하였다. 영조는 숙종과 마찬가지로 『杜詩』의 “一體君臣祭祀同”이라는 구절을 인용하고, 사당을 옮기지 말라고 명하였다.⁷⁷⁾

이어 정조는 다시 숙종이 두보의 시를 인용한 사적을 들며⁷⁸⁾ 사당을 옮겨 세운 것이 잘못된 것임을 지적하고, 나아가 本陵 홍살문 밖에 터를 잡아 매년 寒食에 함께 제사를 지내도록 하였는데, 이것이 바로 配食壇이다. 결국 두보의 시는 숙종 때 시작하여 영조로 계승되었던 단종 사적의 표장을 정조가 이어 받아 완수한다는 계술 이념을 단적으로 표현하는 매개였던 것이다.

정조는 이어 別壇을 설치하는 문제를 논의한 뒤 다음과 같이 지적하면서 자신의 조치가 숙종대 이래의 조치를 계승하는 것임을 분명히 하였다.

전에 우리 聖祖의 하교에 육신의 사당을 本陵 홍살문 안에 그대로 두라고 하셨으니, 매우 훌륭한 생각이었다. 이번에 配食하는 규례를 거행하자고 논의하는 것을 우러러 繼述하는 일단에 부합시키고자 한다. 대체로 제단에 제사지내는 것과 사당에서 제사지내는 것은 사실 차이가 있지만 함께 제사지내는 뜻은 마찬가지이다.⁷⁹⁾

여기서 정조는 配食壇의 規例를 정하는 것이 繼述하는 일단에 부합한다고 평가하고, 그 의미로서 두보의 시에 나타난 것처럼 “함께 제사지내는 뜻”을 강조하고 있다.

한편 배식단은 숙종과 영조의 조치가 세조의 뜻을 살린 것이라는 것과 같은 차원에서 繼述의 의미를 드러내는 것이기도 하였다. 정조는 배식단에서 제사를 지내는 의례를 東鶴寺의 의례에 따라 지내도록 하였다.⁸⁰⁾ 동학사의 의례

77) 『英祖實錄』권92, 영조 34년 10월 丁巳

78) “一體君臣祭祀同”과 “武侯祠屋長隣近”은 같은 시의 시구이다.

79) 『正祖實錄』권32, 정조 15년 2월 丙寅 “昔我聖祖之教以六臣之祠 仍置本陵紅箭門內 猗乎那歟 惟茲議舉配食之典 竊自俯仰述之一端 大抵壇殿與庭食 固有間焉 而從與享之則茅耳”

80) 『正祖實錄』권32, 정조 15년 2월 丙寅

란 세조가 고려의 역대 국왕과 고려말 죄 없이 죽은 신하, 死六臣과 三相 등의 천도를 위해 招魂閣을 세우고 매년 10월 제사를 지내도록 한 것을 말하는 것으로⁸¹⁾ 정조는 배식단에서 이 의례를 준용토록 한 것이다.

이와 함께 『장릉지』의 개찬 작업을 담당할 신하들에게 개찬의 의미와 방향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이 책을 편집하는 것은 깊은 의미가 있으니, 신중히 하지 않을 수 없다. 光廟가 睿宗께 이르기를 “나는 어려운 때를 만났지만 너는 태평한 때를 만났다” 하였고 또 “오늘의 亂臣이요 후일의 忠臣이다”라고 한 聖敎도 있었으니, 여기에서 大聖人の 盛德과 지극한 뜻을 볼 수 있다. 그러니 그 뜻을 우러러 받드는 도리로 볼 때 마땅히 光廟에게 미덕을 돌려야 할 것이다.⁸²⁾

여기서 세조가 예종에게 당부한 구절은 『訓辭』의 서문에 있는 것으로, 後嗣王에게 先代의 형적에 얽매이지 않고 先王의 本意를 실현하는 방향에서 변동을 주도할 것을 강조한 것이었다.⁸³⁾ 이는 숙종과 영조가 각기 死六臣과 端宗, 三相을 차례로 추복하는 명분이 되었다.

이처럼 배식단 건립과 『장릉지』 개찬으로 대표되는 정조의 단종 사적 정비는 숙종과 영조를 계승하고 있음을 드러내는 주요한 사안이었다. 그것은 국왕이 법전을 정비하고 정국을 주도하는 것과 같이 실제 정책에서도 강하게 드러나고 있었으며, 단종 사적의 정비는 이러한 이념을 가장 극명하게 보여주는 상징적인 조치였던 것이다.

2) 元子 위상의 강화와 '君臣分義'의 확립

정조대에 진행된 단종 사적의 정비는 숙종·영조의 사업을 繼述한다는 명분을 드러내는 동시에 정조의 정치적 필요에 의하여 추진되는 성격을 강하게

81) 이에 대해서는 韓祐功, 2001 『朝鮮時代思想史研究論攷』, 한국학술정보, 제2장 참조.
 82) 『正祖實錄』권32, 정조 15년 4월 癸酉 “此書編輯 所重在焉 不可不難慎 光廟謂睿宗有曰予當其屯 爾當其泰 又有今日亂臣 後日忠臣之聖敎 此可見大聖人盛德至意 其在仰體之道 事當歸美於光廟”
 83) 세조의 『훈사』가 가지는 정치사상적 의미에 대해서는 윤정, 2002 앞의 논문 참조.

띠고 있었다. 숙종대 사육신과 단종의 추복은 세자의 위상을 강화하려는 숙종의 정치적 의도와 밀접히 관련되어 있었는데,⁸⁴⁾ 정조의 경우도 같은 목적이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⁸⁵⁾

당초 정조에게는 宜嬪 成氏 소생의 文孝世子가 있었으나 1786년(정조 10)에 요절하였다. 그 뒤 1790년(정조 14) 6월 18일에 綏嬪 朴氏가 다시 아들을 낳았는데,⁸⁶⁾ 그가 뒤의 純祖이다. 뒤늦게 다시 아들을 얻은 탓에 신료들도 바로 元子로 삼을 것을 청하였고, 정조도 이를 받아들여 당일에 원자로 정하고 종묘에 고하도록 하였다.

이틀 뒤 원자의 탄생을 淸 황제에게 보고하는 문제를 논의하는 자리에서 정조는 청 황제의 사전 지시대로 즉시 알리기는 하되 책봉은 천천히 하겠다는 뜻을 표하였다.

숙종이 책봉되었을 때의 나이와 내가 책봉을 받을 때의 나이를 그대로 따르는 것이 마땅하다. 옛날 대신이 “원자의 칭호를 정하는 때가 곧 나라의 근본이 정해지는 날이다”라고 한 말은 格言이며 至論이라 할 만하다. 어찌 책봉을 빨리 하고 늦추는 데 구애될 것인가.⁸⁷⁾

여기서 옛날 대신의 말이란 현종 때의 재상 鄭太和가 숙종의 원자 책봉을 놓고 말한 것이다.⁸⁸⁾ 실제 숙종은 7세에 세자로 책봉되었고, 정조 자신은 8세에 세손으로 책봉되었는데, 이를 근거로 원자의 세자 책봉을 늦춘 것이다.

84) 영조의 경우도 명시적이지는 않지만, 늦은 나이에 얻은 사도세자의 위상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라는 의미도 있었다고 생각된다.

85) 이 시기는 정조의 탕평정치가 본격적으로 추진된 시기로서 단종 사적의 정비도 군신간의 의리를 확립하여 국왕권을 강화하려는 정치적인 흐름 속에 진행된 것이다. 다만 왕권 강화의 초점이 국왕의 주도 아래 계승자를 선정하는 데 놓여 있었으며, 단종의 복위와 諸臣에 대한 사적 정비는 숙종대 이래로 이를 매개하는 요소였다는 점에 주목하는 것이다. 당시의 정국동향에 대해서는 朴光用, 1994 『朝鮮後期 ‘蕩平’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51-182면; 金成潤, 1997 『朝鮮後期 蕩平政治 研究』, 지식산업사 298-319면 참조.

86) 『正祖實錄』권30, 정조 14년 6월 丁卯

87) 『正祖實錄』권30, 정조 14년 6월 己巳 “肅廟封冊時春秋 予之受冊年紀 實合遵倣 古大臣所謂元子定號 卽國本已定之日者 可謂格言至論 豈係於封冊遲速乎”

88) 이 사실은 鄭太和의 卒記에 보인다(『顯宗改修實錄』권27, 현종 14년 10월 甲辰).

이후 원자의 세자 책봉을 독촉하는 신료들과 이를 늦추려는 정조 사이에 줄다리기가 계속 이어졌다. 정조는 세자 책봉을 늦추는 이유에 대해 “세자 책봉은 늦으면 늦을수록 좋다”라고 하면서 그 근거로 줄곧 숙종과 자신의 사례를 들었는데, 그 안에는 원자의 정치적 위상을 확고히 다지려는 뜻이 담겨 있었다.

1786년(정조 20) 정조는 신료들의 세자 책봉 요구에 다시 연기를 고집하면서 다음과 같이 주장하였다.

대체로 元子の 名號를 정하는 날은 곧 國本이 이미 정해지는 때이다. (중략) 돌아보건대, 나는 부덕한 사람으로 정치는 기대에 차지 못하였으나 하늘로부터 아름다운 명을 받게 된 그 근본으로 말하면 실로 책봉의 늦음에서 기인하였으니, 이는 모두가 先大王의 자애로운 은혜이다. 그러나 지금 이 冊禮를 다시 1·2년 기다리는 것이 어찌 繼述하는 一端이 아니겠는가.⁸⁹⁾

정조는 자신의 사례가 先大王, 곧 영조의 의도적인 조치였다고 해석함으로써 계술의 당위성을 강조하였고, 이를 통해 책봉 연기의 궁극적인 목적이 원자 위상의 강화에 있음을 드러내었다.

1799년(정조 22)에 다시 세자 책봉을 연기할 때에도 숙종의 사례를 들고 나왔다.

肅廟朝의 책봉례는 7세에 있었으니 비로소 冊命을 직접 받는 의식을 거행하였는데, 50년 가까이 왕위에 있으면서 태평 세월을 누렸으며 끝없는 복을 후손들에게 내려주었다.⁹⁰⁾

위에서 정조는 숙종이 50년 가까이 재위하면서 후손에게 복을 내려준 근본적인 이유가 7세의 책봉에 있다고 이해하였다. 그리고 나아가 자신이 그것을 계승했다는 것과 자신보다 늦게 책봉되는 원자는 더 좋을 것이라고 설명하고

89) 『正祖實錄』권47, 정조 21년 11월 己巳 “大抵元子定號之日 卽國本已定之時 (중략) 顧予否德 治不僖志 而若言其命哲命吉之本 實基於冊封之遲 則此莫非先大王止慈之恩 今茲冊禮之更待一二年 豈非繼述之一端乎”

90) 『正祖實錄』권50, 정조 22년 11월 丙子 “肅廟朝冊封之禮 則在於七歲 始行冊命親受之禮 而近五十年御極 太平安樂 無疆惟休 垂裕後昆”

있었다.⁹¹⁾

여기서 정조가 冊命을 직접 받는 의식의 시작을 언급한 것은 주목을 요한다. 이는 책명을 직접 받을 수 있을 때 책봉하는 의식을 진행한다는 것이지만, 한편으로 그것은 세자 책봉을 매개로 한 국왕과 세자의 직접적인 연결을 상징하는 것이었다. 이는 국왕이 후계자를 직접 선정하고 받도록 하겠다는 것으로, 왕위를 둘러싼 신료들의 논의를 차단하고 君臣 관계를 명확히 구분하는 分義를 표방하는 의미를 담고 있었다.

결국 정조가 신료들의 집요한 요청에도 불구하고 세자 책봉을 계속 늦춘 데는 원자가 장성하여 숙종에서 자신까지 내려온 왕업을 충실히 계승해 갈 것을 기대하는 의도가 담겨 있었다고 이해된다. 정조는 1800년(정조 24) 정월 초하루에 이르러 비로소 원자를 세자로 책봉하였으며, 2월에 관례와 책봉례를 거행하였다.⁹²⁾ 10세가 넘어서야 비로소 세자로 책봉한 것인데, 이는 조종의 관례로 보아도 늦은 것이었다. 이를 두고 정조는 원자가 많이 성취하기를 바라는 뜻에서 나온 것이라 하였다.⁹³⁾

하지만 이러한 조치는 위상 강화라는 정조의 의도와는 별도로 원자의 위상에 약점을 드러내는 것이기도 하였다. 정조에게 다른 왕자가 없는 상황에서 원자는 계승자를 의미하는 것이지만, 명분상 세자가 아니기 때문에 왕위 계승이 보증된 것이 아니라는 혐의를 받을 수 있었다. 처음부터 정조가 “원자만으로도 國本이 세워진 것”이라는 사실을 거듭 천명한 것은 뒤집어 말하자면 원자로 남겨두는 데 따라 발생할 수 있는 논란의 여지를 미리 차단하는 조치였다고 할 수 있다.

정조는 처음부터 세자 책봉을 최대한 늦추겠다는 의도를 가지고 있었던 만큼, 원자를 국본으로 천명하는 것과 함께 신료들에 대해 원자의 위상을 보강

91) 여기에는 만 1세에 세자로 책봉되었던 경종과 사도세자가 불운을 겪은 점도 작용했을 것으로 생각된다. 경종의 원자 및 세자 책봉으로 인해 환국이 발생하였고, 사도세자는 부왕 영조에게 죽임을 당하였다. 더구나 앞서 1782년(정조 6)에 태어난 文孝世子가 세 살에 세자로 책봉되었다가 불과 다섯 살의 나이로 요절했다는 것은 더욱 큰 부담이었을 것이다. 여기에 비추어 7세에 책봉되고 40여 년의 재위 기간을 가졌던 숙종의 사례는 더욱 바람직하게 여겨졌을 것이다.

92) 『正祖實錄』권53, 정조 24년 2월 乙酉

93) 『正祖實錄』권53, 정조 24년 정월 甲寅

할 수 있는 명분적 조치가 필요하였다. 1791년(정조 15)에 이루어진 配食壇 건립과 『장릉지』개찬은 바로 원자의 위상 강화라는 정조의 정치적 의도를 반영하고 있었다.

앞서 사육신과 단종 추복은 숙종이 ‘君臣의 分義’를 강조함으로써 세자의 위상을 확증하려는 조치였다. 정조의 단종 사적 정비 또한 숙종 이래 강조된 ‘군신의 분의’를 확립함으로써 어린 원자의 위상을 확증하려는 것이었다. 배식단은 단종에게 節義를 지킨 신료들의 祠版을 장릉 홍살문 밖에 봉안하고 매년 寒食에 함께 제사를 지내도록 한 것이다. 다시 말해 단종과 諸臣의 관계가 忠義로 맺어진 것이고, 끝내는 국가가 이를 인정하여 군주와 함께 제사를 받게 하는 것을 직접 보여주는 장치였던 것이다.

이 점에서 배식단 건립은 단종 사적 표장 작업의 결산이자 그 목적이었던 ‘君臣의 分義’를 확립하는 것으로 평가된다.⁹⁴⁾ 그리고 『장릉지』개찬은 단종과 제신 사이의 分義를 자료적으로 인증하는 작업이었다. 원자가 태어난 이듬해 곧바로 이 작업이 실행되었다는 것은 정조의 의도를 명확하게 드러내 준다.

당시 정조가 원자의 위상과 관련하여 ‘군신의 분의’의 확립에 주력하고 있었음은 1794년(정조 18)에 이루어진 柳夢寅의 복관을 통해서 보다 구체적으로 읽을 수 있다. 유몽인은 광해군 때 禮曹參判과 吏曹參判을 지냈으나, 인조반정 후에 처벌을 모면하였다. 그 후 관직에서 물러나 방랑생활을 하던 중 광해군의 복위를 도모한다는 고변으로 처형되었다. 광해군에 대한 유몽인의 태도는 伯夷 叔齊처럼 군주에게 절의를 지키는 표상으로 인식되었고,⁹⁵⁾ 정조는 바로 이 점에 주목하여 그의 복관을 추진하였다.

1794년(정조 18) 5월 義禁府에서는 유몽인의 신원을 청한 西部 유학 柳琢

94) 정조는 즉위 초 사도세자의 죽음에 연루된 무리를 숙청하면서 반포한 綸音에서 “儲君과 조정 신하의 사이에도 또한 君臣의 分義가 있는 법이니, 조정 신하로서 儲君에게 무례한 자를 신하의 禮가 있는 것이라 할 수 있겠는가?”라고 하여 儲君과 신하들의 관계를 ‘君臣의 分義’라는 관점에서 동일하게 인식하였다. 이 맥락에서 단종 사적의 정비에는 원자에 대해서도 ‘君臣의 分義’를 적용하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이해할 수 있다.

95) 반정 이후부터 그가 “사육신에 부끄럼이 없이 하겠다”고 했다가(『仁祖實錄』권 2 인조 원년 7월 乙卯) “伯夷에 관한 설을 주창하여 학자들이 따라 화답하였다”는 고변이 이어졌다(『仁祖實錄』권 7, 인조 2년 11월 丁丑).

의 상을 보고하면서 복관이 부당하며 유희를 처벌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었다. 정조는 이 문제를 대신들에게 의논토록 했는데, 朴宗岳은 그의 절개를 인정하고 奇自獻의 예에 따라 복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건의했으나 金憲는 복관이 적절치 않다고 반대하였다. 의금부에서는 찬반 의견을 전하면서 그와 함께 무고 당한 사람들이 대부분 신원된 마당에 그를 복관하는 것은 무리가 아니라고 입장을 바꾸었다. 이는 군주에 대한 유몽인의 절의를 재평가했기 때문으로, 그 논거는 다음 설명에 집약적으로 나타나 있다.

신하가 임금을 섬기는 의리를 오직 자기 자리에서 목숨을 다하는 것으로, (임금의) 明暗으로 인해 절의를 달리 하지 않은 것이 뜻뜻한 道입니다.⁹⁶⁾

곧 군신의 의리는 군주의 자질과 상관없이 지켜져야 한다는 원론을 제시한 것인데, 이는 정조의 입장과 일치하는 것이었다. 금부의 보고를 받은 정조는 유몽인의 절조를 칭송하면서 그에 대한 논의가 금지된 것은 吉再·金時習 등을 관용하던 聖祖의 뜻이 아니라고 지적하며 신원을 허락하였다.

10여 일 뒤 정조는 時任·原任 대신과 閣臣을 부른 자리에서 다음과 같이 유몽인의 절의를 평가하였다.

대저 몽인이 仁廟 때에 이미 분수를 벗어났다는 말이 없고, 또 西宮에 충성을 다했다고 보면, 그의 죽음은 不事二君의 의리일 뿐이다. 나는 몽인의 일을 六臣만 못한 것이 없다고 여긴다.⁹⁷⁾

여기서 정조가 유몽인을 六臣에 견준 것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육신이 어린 국왕에 대해 절의를 지킨 표상이라면, 유몽인은 불초한 국왕에 대한 절의를 상징하는 것으로, 모두 ‘不事二君’의 이념을 극명하게 보여준 사례로 인식 되기 때문이다.

결국 정조는 9월에 柳夢寅을 吏曹判書로 추증하고 아들들도 복관시켰다. 이

96) 『正祖實錄』권40, 정조 18년 5월 戊戌 “人臣事君之義 惟其所在而致命 不以明暗而異節 自是經常之道”

97) 『正祖實錄』권40, 정조 18년 5월 戊申 “蓋夢寅在仁廟 既無犯分之說 又爲效忠於西宮 而其死則特以不事二君之義也 予則以夢寅事 不下於六臣”

자리에서 정조는 유몽인을 특히 金時習과 대비하였다. 유몽인과 김시습은 모두 국왕에 대한 의리를 지키며 속세를 떠나 있었다는 공통성을 가지고 있었다. 정조는 이들을 비교 평가하면서 유몽인에 대한 증직과 아울러 몰수 재산의 환급, 봉사손의 선정을 명하였다.

時習과 夢寅 저 두 사람이 흠모한 것은 伯夷와 叔齊이다. 하나는 죽고 하나는 살아 갈지 않은 것은 다만 자취와 때일 뿐이다. 마음속으로 조용히 의리를 취한 그 지극한 충성은 백년 뒤에 가서 대조하여 보아도 털끝만치도 차이가 없을 것이니, 조정에서 시습에게 이미 베푼 것을 몽인에게 베풀지 않아서야 되겠는가.⁽⁹⁸⁾

위에서 정조는 김시습과 유몽인을 모두 백이 속제에 견주고 이를 토대로 포장에서도 양자를 동일하게 처리하도록 한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정조의 평가는 신원되는 개인의 절의를 논하는 차원의 것이 아니었다. 그는 유몽인과 김시습의 절의를 평가하는 도입부에서 다음과 같은 논리를 제시하였다.

무릇 신하의 충성은 여자의 정절은 한가지다. 임금에 무례하더라도 신하가 불충할 수는 없으니 남편의 경우와 같다. 비록 남편이 어질지 못하더라도 여자가 불충할 수는 없는 것이다.⁽⁹⁹⁾

이것은 군신의 관계를 부부의 관계와 동일한 것으로 인식하고 “忠臣은 不事二君이요, 烈女는 不更二夫”라는 논리 속에 군신의 관계를 부부처럼 절대적인 의리로 묶고자 한 것이다. 곧 국왕의 됄됨이와 상관없이 신료들은 절의를 지켜야 한다는 것, 나아가 군주의 자질을 신료들이 논할 수 없다는 것을 강조한 것이다.

유몽인의 복관은 불초하여 반정으로 쫓겨난 임금에 대한 절의까지도 공식적으로 인정함으로써 군신 관계의 절대성을 실례를 통해 뒷받침한 것이었다.

98) 『正祖實錄』권41, 정조 18년 9월 甲寅 “時習夢寅 彼二人者所慕者夷齊也 一生一死之不同 特迹耳時耳 腔者裏從容取義之赤血丹忱 百載相照 無絲毫之出入 則朝家之所已時習者 可不施於夢寅乎”

99) 『正祖實錄』권41, 정조 18년 9월 甲寅 “大抵臣之忠 女之貞 一也 君雖無禮 臣不可以不忠 亦猶夫 夫雖不良 女不可以不貞也”

나이가 어린 국왕에 대한 절의를 표상하는 작업과 연계되면서 군신 관계의 불변성, 곧 ‘君臣의 分義’를 절대적 가치로 선언하는 것이기도 하였다. 이러한 행위는 신료들의 公論으로 국왕을 교체할 수 있다는 인조반정 이후 사림정치의 명분에 대해 국왕이 직접 반론을 제기한 것이라는 점에서 각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이처럼 유몽인 복관에 나타난 정조의 의도는 앞서 장릉에 배식단을 건립한 의도와 같은 것으로, 그것은 국왕의 賢否나 여건에 상관없이 절의를 지키라는 요구였다. 그것은 곧 어린 원자의 정치적 위상을 보강하려는 목적을 강하게 반영하는 것이었다.

한편 정조는 세자 책봉을 늦추면서도 내용적으로는 세자에 준하여 그 위상을 다져나갔다. 원자가 통상적인 세자 책봉의 나이를 넘어서자 세자에 준하여 교육하도록 한 것은 그 예이다. 정조는 1796년(정조 20) 12월에 宋煥箕를 元子師傅로 임명하여 정식 교육을 시작하도록 하였고,¹⁰⁰⁾ 이듬해에는 진강 교재를 『小學』으로 정하였다. 이어 『소학』 7부를 내려주면서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이것은 내가 春邸에 있을 때에 강독하던 책이니 원자가 강독하는 책은 이것을 사용하게 하고, 師傅와 諭善이 강독하는 책은 홍문관에 先朝의 經筵에서 사용하던 책이 있으니 가져다 사용하는 것이 좋겠다.¹⁰¹⁾

이 때 정조가 굳이 『소학』을 진강 책자로 정하고 자신이 사용하던 책을 내려준 것은 특별한 의미를 가진다.

숙종대 이후 『소학』은 세자가 입학 후에 처음 배우는 책으로서 세자의 위상을 표상하고 있었다. 숙종은 1694년(숙종 20) 자신의 서문을 넣어 『소학』을 간행하였는데, 이는 어린 나이에 책봉된 세자의 위상을 확증하는 작업의 일환이었다. 영조 또한 사도세자가 만 1세 때 御筆로 內賜記를 적어 내려주었고, 사도세자는 세손(정조)이 만 1세 때 여기에 다시 자신의 內賜記와 詩를 적어 내려주었다. 곧 『소학』은 숙종에서 내려오는 왕통의 상징과도 같은 것이었

100) 『正祖實錄』권45, 정조 20년 12월 壬申

101) 『正祖實錄』권46, 정조 21년 4월 戊子 “此予在春邸時所講冊子也 元子講冊 以此用之 而師傅諭善講冊 則弘文館有先朝經筵所用件 取用好矣”

다.¹⁰²⁾ 정조가 원자의 『소학』 강독에 자신이 읽던 책을 직접 내려준 것은 이러한 전례를 따른 것이었다. 곧 정조가 세손 당시의 책을 원자에게 내려주고 이를 강독케 한 행위는 원자를 정조의 실질적인 계승자로 천명하는 행위였던 것이다.

결국 정조의 배식단 건립과 『장릉지』~『개찬』 등 단종 사적 정비는 숙종대 이래로 단종 사적에 부여된 ‘君臣의 分義’를 절대적 가치로 확정함으로써 원자의 정치적 위상을 보증하려는 조치였다고 평가할 수 있다. 이것은 의식적으로 원자의 세자 책봉을 늦추면서 국왕이 주도하는 국가체제를 도모하는 정조의 정치적 의도와 연계된 것이었다.¹⁰³⁾

4. 맺음말

이상에서는 정조대에 진행된 단종 사적의 정비 내용과 그것에 담긴 정치사적 의미를 繼述 이념과 ‘君臣分義’의 확립이라는 관점에서 검토하였다. 이를 통해 얻어진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숙종과 영조대에 걸쳐 端宗과 諸臣에 대한 追復이 단계적으로 실현됨에 따라 관련 사적의 정비도 본격화되었다. 영조대에는 莊陵과 淸冷捕, 思陵, 淨業院 등지에 碑를 세웠고, 愍忠祠를 보수하였다. 정조대에 들어 제신에 대한 포증이 더욱 확대되면서 莊陵 洞口的 六臣祠를 보수하고 永豐君의 묘를 修改하

102) 윤정, 2004 『肅宗-英祖代의 세자 교육과 『小學』~『奎章閣 소장 『소학』~관련 서적의 분석』 『奎章閣』27

정조가 원자에게 내려준 책이 영조의 御筆內賜本일 가능성이 크지만, 정조의 내사기가 적혀 있지 않아 확인할 수 없다. 이와 관련된 자세한 문제는 正祖와 純祖의 세자책봉과 관련하여 별도로 다룰 것이다.

103) 정조가 일반적인 책봉 나이를 넘기면서까지 원자의 세자 책봉을 늦춘 데에는 淸 乾隆帝의 영향도 없지 않다고 생각된다. 건륭제는 재위 중에 태자를 책봉하지 않았고, 재위 60년 만에 열 다섯째 아들에게 제위를 물려주었다. 정조는 이러한 조치가 건륭제의 정치적 안정과 문화 발전을 가져왔다고 이해함으로써 자신 역시 세자 책봉을 늦추려 한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건륭제가 죽은 이듬해 정월 초하루에 세자를 책봉했다는 점도 그 상관성을 뒷받침한다. 이것은 건륭제의 정치와 문화에 대한 정조대 국왕 및 신료들의 이해 문제와 연결되는 것으로 이에 대해서는 앞으로의 연구과제로 남겨둔다.

는 등의 조치가 이루어졌다.

1791년(정조 15)에는 尹師國의 보고에 따라 단종이 거닐었던 子規樓 터를 찾아 중건하였고, 莊陵 祭井에 ‘靈泉’이라는 이름을 내리고 비를 세웠다. 이와 함께 제신의 사적을 대대적으로 조사하여 『莊陵配食錄』을 편찬하고, 이를 토대로 장릉에 配食壇을 세워 단종과 제신을 함께 제사하도록 하였다. 이 작업은 숙종대 이래 진행된 단종 제신의 포장 사업의 종합이면서 ‘君臣의 分義’를 확정하는 작업이었다.

단종 및 제신들의 포장 작업에는 그 사적을 뒷받침하는 자료적 근거가 필요하였다. 實錄의 考出 만으로 부족한 부분에서 중요한 전거가 된 것은 『莊陵誌』였다. 정조는 제신 사적의 발굴과 조사를 진행하면서 이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국가적으로 공인하는 작업을 진행하였는데, 『장릉지』~개찬은 그 산물이었다. 이 작업은 1791년(정조 15)에 시작되었으나 완성을 보지 못하였다가 1796년에 『莊陵史補』~편찬으로 마무리되었다.

현재 규장각에는 『장릉지』~및 『장릉사보』~외에 개찬 과정에서 정리된 몇 종의 책이 전한다. 이 중 『莊陵瞻錄』은 개찬 작업의 전말을 정리한 결산에 해당한다. 『(改撰)莊陵誌』는 처음 尹光普가 志體로 정리한 초고본으로 판단되며, 『莊陵事略』은 李義鳳이 편년체로 정리한 초고본의 일부로 추정된다. 그리고 『莊陵誌補初稿』는 두 초고본을 합하여 정리한 것으로 『장릉사보』의 완성 단계에 해당한다. 이외에 장서각에는 1807년(순조 7)에 朴奎淳이 찬진한 『莊陵誌續編』이 소장되어 있다.

숙종-영조대의 단종 추복과 제신 포장은 ‘君臣의 分義’를 확증하고 繼述을 통한 체제 정비의 이념적 근거를 제시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었는데, 정조의 단종 사적 정비 또한 그 연장선에 있었다.

정조는 즉위 직후부터 숙종과 영조에 대한 繼述을 정치 운영의 핵심 이념으로 채용하고 있었는데, 『國朝寶鑑』의 편찬은 그러한 이념을 잘 보여주는 예이다. 이것은 세조의 寶鑑 편찬에 이어 이루어진 숙종의 『宣廟寶鑑』~편찬과 영조의 『肅廟寶鑑』~편찬을 계승한 것인 동시에, 숙종의 『列聖御製』, 영조의 『列聖誌狀』을 계승하는 의미를 가지는 것으로, “列朝에서 겨를하지 못했던 志事を 추후에 행하는 것”으로 규정되고 있었다.

이같은 지향은 단종 사적의 정비에서도 동일하게 구현되는 것이었다. 정조는 제신 포증 확대와 단종 사적 정비의 의미를 숙종과 영조에 대한 繼述로 설정하고 있었고, 신료들도 정조의 자규루 중건 및 배식단 건립을 繼志述事의 의미로 평가하고 있었다. 특히 배식단 건립은 숙종이 “一體君臣祭祀同”이라는 杜甫의 詩句를 매개로 제시했던 “군신이 같이 제사를 받는다”는 이념을 구현하는 것이었다.

한편 정조의 단종 사적 정비에는 정조 자신의 정치적 의도도 내포되어 있었는데, 이는 숙종이 사육신과 단종의 추복을 통해 세자의 위상을 강화하고자 했던 것과 맥을 같이한다. 정조는 文孝世子가 요절한 후 뒤늦게 얻은 元子의 세자 책봉을 계속 늦추었다. 이것은 원자가 곧 國本이라는 원론과 함께 책봉이 늦은 숙종과 자신의 사례를 원용하며 “세자 책봉은 늦을수록 좋다”는 논리를 설정하면서 원자에게서 무궁한 왕업을 기대하는 심리를 표한 것이었다.

이 때 원자로 남아 있는 데 따르는 정치적 부담을 줄이고 그 위상을 보강하기 위한 명분적 조치가 수반되었다. 원자 탄생 이듬해 이루어진 자규루 중건과 배식단 건립은 그 표현으로 국왕에 대한 신료들의 절의를 절대적 가치로 규정하는 것이었다. 이것은 1794년(정조 18) 광해군에 대한 절의를 지킨 인물로 평가되는 柳夢寅을 전격 복관시키는 데서 극명하게 나타났다. 이를 통해 ‘군신의 분의’는 어린 국왕이나 불초한 국왕에게 모두 적용되는 것으로서 여자가 남편의 자질과 상관없이 절의를 지켜야 한다는 것과 동일한 이념으로 강조되었다.

결국 정조의 단종 사적 정비는 숙종-영조대의 사업을 계승하는 동시에 그 과정에서 제시된 ‘군신의 분의’라는 이념을 국왕의 자질과 여건에 상관없이 준행되어야 하는 절대적 가치로 확립하는 조치였다고 평가할 수 있다.

(필자: 경상대학교 인문학부 사학과 강사)

주제어 : 配食壇, 莊陵誌, 莊陵史補, 繼述, 君臣分義

투고일(2004. 4. 29), 심사시작일(2005. 5. 20), 심사종료일(2005. 5. 31)

참 고 문 헌

- 『仁祖實錄』, 『顯宗改修實錄』, 『肅宗實錄』, 『英祖實錄』, 『正祖實錄』, 『純祖實錄』, 『弘齋全書』, 『列聖御製』, 『國朝寶鑑監印廳儀軌』
- 『子規樓記』(奎10287), 『子規樓上樑文』(奎10235, 奎10281, 奎10120), 『莊陵靈泉碑』(奎10189, 奎10253), 『子規樓圖』(귀 K2-4383)
- 『莊陵配食錄』(奎5489, 奎7878), 『莊陵誌』(奎3653, 奎3683, 一囊古 393.1-B148j), 『(改撰)莊陵誌』(奎12873), 『莊陵事略』(奎7780), 『莊陵誌補初稿』(奎1944), 『莊陵謄錄』(奎12975), 『莊陵誌續編』(K2-4482)
- 강혜선, 2000 「杜甫의 시선집 杜律分韻」 『정조의 시문집 편찬』, 문헌과해석사.
- 金成潤, 1997 「正祖의 蕩平 추진과정과 정국의 동향」 『朝鮮後期 蕩平政治 研究』, 지식산업사.
- 朴光用, 1994 「正祖년간 ‘峻論’주도 정국과 ‘義理’蕩平論」 『朝鮮後期 ‘蕩平’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沈羲基, 1999 「死六臣 裁判과 그 復權 : 조선시대판 과거청산작업의 사례연구」 『법제연구』17.
- 윤정, 2002 「조선 世祖代 『訓辭』편찬의 정치사상적 의미」 『韓國學報』108.
- 윤정, 2004 「숙종대 端宗 追復의 정치사적 의미」 『韓國思想史學』22.
- 윤정, 2004 「英祖의 三相 追復과 ‘善述’ 이념 -영조 정치사상의 일 단면」 『韓國學報』116.
- 윤정, 2004 「肅宗-英祖代의 세자 교육과 『小學』 奎章閣 소장 『소학』 관련 서적의 분석」 『奎章閣』27.
- 鄭玉子, 1988 「正祖朝 文化政策」 『朝鮮後期文化運動史』, 一潮閣.
- 鄭玉子, 1990 「正祖의 文化政策」 『朝鮮後期 文學運動史』, 서울대학교출판부.
- 정옥자 외, 1999 『정조시대의 사상과 문화』, 돌베개.
- 鄭玉子, 2000 『정조의 수상록 일득록 연구』, 一志社.
- 정옥자, 2001 『정조의 문예사상과 규장각』, 효형출판.

정재훈, 2002 「國朝寶鑑을 통해 본 朝鮮前期의 政治思想」 『國史館論叢』100.

鄭亨愚, 1982 「國朝寶鑑의 編纂經緯」 『東方學志』33.

崔承熙, 2003 「朝鮮後期 鄉吏身分 移動與否考(1) : 鄉吏家門 古文書を 통한 事例研究」 『古文書を 통해 본 朝鮮後期 社會身分史研究』, 지식산업사.

韓祐旻, 2001 「東學寺·東學書院의 '東學'釋義 試考」 『朝鮮時代思想史研究論攷』, 한국학술정보.

<Abstract>

The Renovation of the Historical Vestiges Related to the Late King Danjong/端宗 during the Reign of King Jeongjo/正祖 and the Establishment of the Proper Righteousness between A King and Subjects or the “*Gun-Shin Buneui*(君臣分義)” Philosophy

Yoon, Jeong*

King Jeongjo's decision to renovate the historical vestiges of the late King Danjong was based upon his intention to demonstrate his succession and enlargement(‘繼述’) of the teachings and achievements of Kings Sukjong and Yeongjo, and it was also an act of demonstrating his own political intentions.

Prime examples of his intentions were the renovation of the Jagyu-ru/子規樓 tower and the construction of the Baeshik-dan/配食壇 stand(a attached stand for food-offering) at the Jangreung mausoleum. Both projects were executed in 1791, 15th year of his own reign. King Jeongjo also revised(改撰) the 『Jangreung-ji/莊陵誌(A Document regarding facts related to the Jangreung Mausoleum)』 and based upon that revision newly published the 『Jangreung Sabo/莊陵史補(Supplementary comments for the History of Jangreung Mausoleum)』, in order to reorganize and publicly certificate

* Lecturer, Department of Korean History, Gyeongsang National University

necessary materials for honoring('褒獎') the late King Danjong. The first draft of this document is currently in custody of the Gyujanggak Archives of the Seoul National University.

King Jeongjo's philosophy of succeeding Kings Sukjong and Yeongjo was well described in the publication of the 『Gukjo Bogam/國朝寶鑑』. The objective of this publication was indicated inside as 'finally performing an honorable task(志事) which have not been performed for many reigns of many Kings'. And this was the intention behind renovating historical vestiges related to the late King Danjong as well.

After a long waiting King Jeongjo finally had a son, and even if it meant the delay of naming him the crown-prince, King Jeongjo needed a rightful cause to support and consolidate the prince's position, which would in turn ensure lasting prosperity of the Kingdom. The establishment of the Baeshik-dan stand was an action derived from such hope. It was also an act of defining the vassals' loyalty to the King as an absolute moral code. King Jeongjo had the honor of Yu Mong In/柳夢寅 restored, as that man had maintained his loyalty to King Gwanghae-gun in the past.

So, in the end the renovation of historical vestiges related to the late King Danjong served as the King's requirement of the vassals, urging them to maintain their absolute loyalty to the King no matter what kind of personal qualities the King happened to bear. It was also an act of bringing an ultimate definition to the concept of "*Gun-Shin Buneui*/君臣分義(The proper righteousness between A king and Subjects)", which was first suggested during the reign of King Sukjong and reinforced during the reign of King Yeongjo.

Key Words : A Document regarding facts related to the Jangreung Mausoleum(莊陵誌), An attached stand for food-offering (配食壇), Supplementary comments for the History of

Jangreung Mausoleum(莊陵史補), succession and enlargement
(繼述), The proper righteousness between A king and
Subjects(君臣分義)